

政策協議會시리즈 9

1981. 11

沿近海漁業의 發展方向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머 리 말

이 책자는 지난 11월 3일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이 주최한 沿近海漁業의 發展方向에 관한 政策協議會에서 발표된 主題論文과 討議內容을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이 날 協議會에는 오전에 4명의 主題發表者의 論文發表와 이에 대한 간단한 質疑가 있었으며 오후에는 이 主題發表 內容을 중심으로 綜合討議가 있었다.

28명의 官界, 學界, 言論界, 業界人士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會議에서 參席者들은 평소의 실무경험에서 보고 느낀 영세한 우리 沿近海漁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改善策을 제시하였다. 이중 특히 資源保護와 管理, 淺海養殖業과 水質汚染, 水產物 價格安定과 流通, 漁家所得問題 등이 집중적으로 論議되었으며, 또한 이에 못지 않게 政策當局이나 國民全體 수준에서의 水產業에 대한 再認識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번 강조되었다.

討議內容이 광범위하고 전반적이었으나, 우리 沿近海漁業이 당면한 문제점들이 명료하게 인식되었으며, 轉換期에 처한 우리 水產業의 앞으로의 政策方向이 도출되었다고 보았기에 當 研究院에서는 이 날의 政策協議會 內容을 책자로 발간하여 關係機關의 實務와 研究에 參考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펴낸다.

1981. 11.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甫 炫

빈

면

目 次

머 리 말

主題發表 論文

沿近海資源의 現況과 展望	朴 炳 夏	1
沿近海漁業의 改善方向	朱 尤 一	16
沿近海漁業의 經營合理化方案	張 謨 鎬	32
水協運動의 成果와 展望	安 重 基	42

討議內容

一般討議	59
綜合討議	81
建 議 書	88

附 錄

1. 開會辭	金 甫 炫	90
2. 會議時間表		92
3. 參席者名單		93

빈

면

沿近海資源의 現況과 展望

朴 炳 夏*

1. 序 論

韓國沿近海漁業의 總漁獲量은 增加趨勢에 있어 1970年 72萬 ㄲ에서 1980년에는 137萬 ㄲ에서 약 2倍 增加를 보이고 있다.

經濟開發計劃의 一環으로 推進된 漁船의 增大 및 大型化, 裝備의 現代化, 漁具・漁法의 改良 및 漁撈技術의 向上 등으로, 近海漁場의 擴大利用과 漁獲能率이 向上됨에 따라 漁獲量의 增加를 가져왔다.

그러나, 限定된 漁場에서의 單位努力當 漁獲量의 低下, 高級魚種의 漁獲不振, 魚體의 小型化 및 油價昂騰에 의한 出漁經費의 過重한 負擔은 現實的으로 漁業經營의 收支惡化를 招來하게 되었다.

80年代를 향하여 새 歷史를 創造하는 現時點에서 沿近海漁業資源의 變動傾向과 資源狀態를 評價함으로써 今後의 沿近海漁業의 打開해 나아갈 方向設定에 參考하기를 바라면서 分析結果를 要約하여 說明하고자 한다.

2. 資料 및 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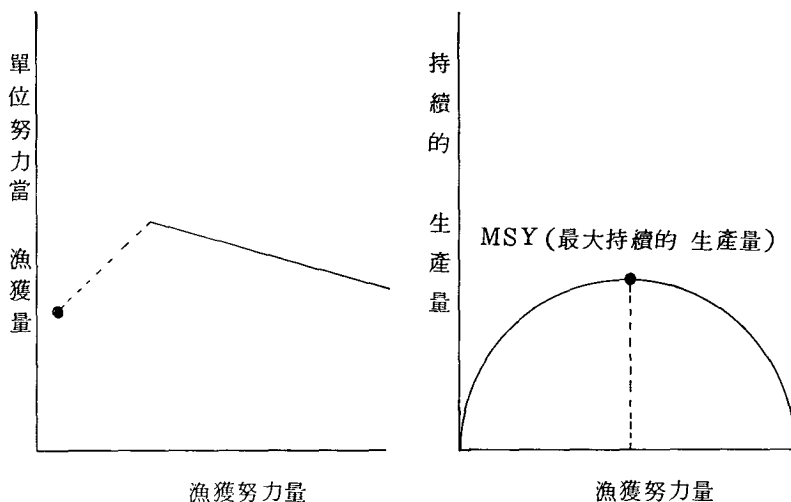
1970~1980 年 間의 水產統計年報에 의한 漁獲統計資料와 同期間中 水

* 國立水產振興院 沿近海資源調査科長.

産振興院에서 調査한 漁獲努力量 및 單位努力當 漁獲量資料를 利用하여 沿近海 主要 10個 魚種 (꽁치, 명태,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말쥐치, 멸치, 전갱이, 갈치, 참조기)에 대하여 分析하였다.

資源評價方法에 있어서는 年間漁獲量과 年間努力當 漁獲量資料로서 分析可能한 剩餘生産曲線理論을 適用하였다.

圖 1. 剩餘生産曲線理論 模式圖



3. 現 況

가. 沿近海 漁獲量의 年變動

1) 沿岸・近海 漁獲量

沿岸漁獲量은 1970年 53萬 ㄱ에서 74年까지는 漸增하여, 74年은 92萬 ㄱ의 漁獲으로 70年에 비하여 약 75%의 增加를 보였으나 그 이후 漸減하여 80年에는 52萬 ㄱ으로 70年 水準으로 還元되었다.

한편, 近海漁獲量은 70年의 20萬%에서 年年增加 되어 80년에는 85萬%으로 70년에 비하여 약 4.3 倍의 增加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沿近海 合計 漁獲量은 70年 79萬%에서 增加趨勢를 보여 79년에는 141萬%으로 70년에 비하여 1.8 倍 增加되었으나 80년에는 79年比 약 2%인 3萬%이 減少되었다. <附表 1>.

2) 漁業別 生産量 變動

沿近海漁業을 9個 業種으로 大別하여 1970~80年間の 漁獲量 變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底引網類: 18 ~ 37萬%, 平均 30萬%의 漁獲量을 나타내고 있으며, 1970 ~ 78年間은 增加傾向 이었으나 1979 ~ 80年間은 減少됨.

나) 旋網類: 4 ~ 22萬%, 平均 12萬%의 漁獲量을 나타내고 있으며, 增加傾向임

다) 敷網類: 11 ~ 27萬%, 平均 20萬%의 漁獲量을 나타내고 있으며, 1970 ~ 74年間은 增加, 1975 ~ 78年間은 平衡, 1979 ~ 80年間은 增加傾向임.

라) 刺網類: 10 ~ 19萬%, 平均 13萬%의 漁獲量을 나타내고 있으며, 1970 ~ 74年間은 增加, 1975 ~ 80年間은 減少傾向임.

마) 引網類: 3 ~ 14萬%, 平均 8萬%의 漁獲量을 나타내고 있으며, 1970 ~ 75年間은 增加, 1976 ~ 80年間은 增加되어 平衡狀態임

바) 一本釣類: 2 ~ 7萬%, 平均 4萬%의 漁獲量을 나타내고 있으며, 增加傾向임.

사) 延繩類: 1 ~ 4萬%, 平均 3萬%의 漁獲量을 나타내고 있으며, 不規則한 變動을 示顯하면서 平衡을 유지하고 있음.

아) 捕貝・採藻類: 9 ~ 13萬%, 平均 11萬%의 漁獲量을 나타내고 있으며, 平衡을 유지하고 있음

자) 定置網類: 1 ~ 10萬%, 平均 5萬%의 漁獲量을 나타내고 있음

으며, 增加傾向임 (附表 2).

나. 主要 魚種의 資源動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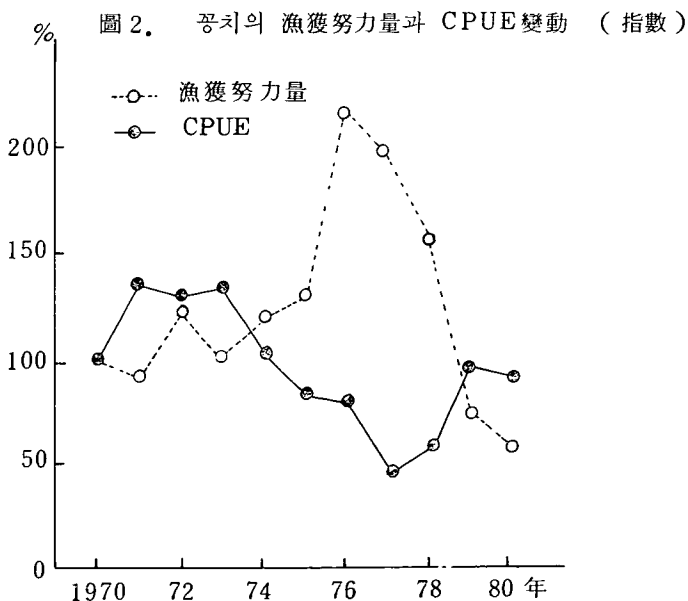
1) 東 海

가) 꽁치

1970 ~ 74 年間 漁獲量은 25 ~ 42 千噸으로 年에 따라서 變動幅은 크나 一定한 水準을 유지하다가 1977 年 이후 減少傾向에 있다.

또한, 漁獲努力量 (流刺網幅數) 도 같은 傾向을 나타내고 있으나 幅當 漁獲量 (CPUE) 은 1977 年까지는 減少되었으나 그 이후 78 年부터 增加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꽁치의 最大持續의 生産量 (MSY) 은 32 千噸으로 推定되었으며, 資源은 一定한 水準에서 平衡狀態를 維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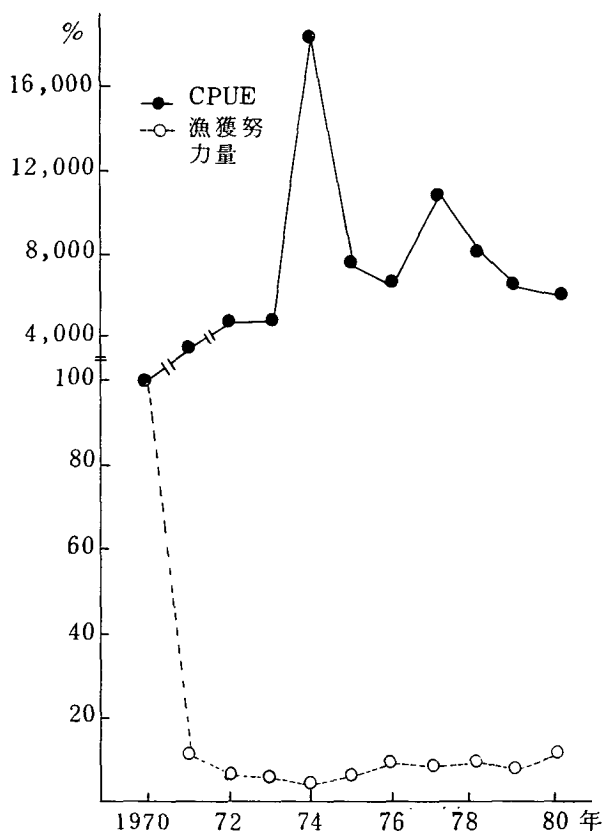
나) 명태

1970 ~ 77년까지 漁獲量은 增加傾向을 나타내어 1977년에는 12萬%을 漁獲하였으나, 그 이후 78년부터 약간 減少되어 10萬%대로서 平衡을 유지하고 있다.

漁獲努力量 (東海區 棧底: 引網當漁獲量)은 1976년까지 增加하였으나 그 이후 減少傾向에 있으며, CPUE는 77년까지 減少되었다가 78년 이후 약간 增加되었다.

명태의 MSY는 99千%으로 推定되었으며, 資源은 比較的 安定된 狀態에 있다고 判斷되나 最近의 減少傾向은 주의를 요한다고 본다.

圖 3. 명태의 漁獲努力量과 CPUE 變動 (指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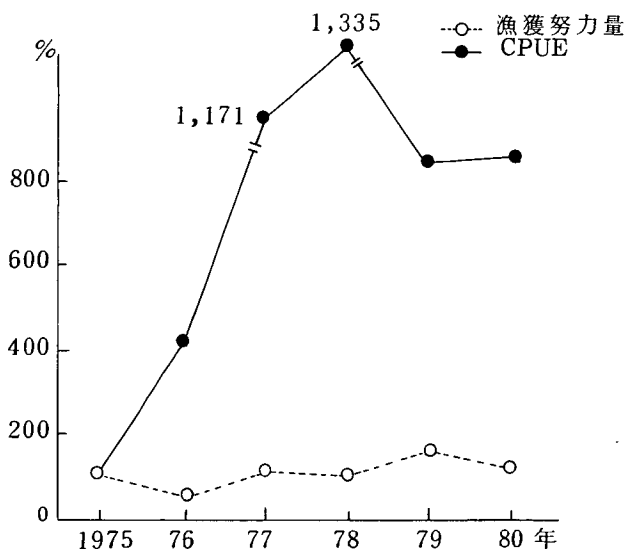
다) 정어리

1930年代 韓國沿岸에서 100萬%를 上廻하여 1937년에는 약 140萬%를 漁獲하므로써 單一種으로서 당시 世界 第1位를 차지한 바 있다.

1940年代부터 資源은 急減되어 거의 漁獲되지 않았으나 1970年代부터 資源은 恢復되기 시작하여 同年에는 약 100%의 漁獲을 보인후 年年 增加되어 1978년에는 54千%의 漁獲을 보였고 最近 (1979 ~ 80年) 에는 약간 減少되었다.

漁獲努力量 (旋網: 揚網回數)은 거의 일정한 水準을 유지하고 있으나 CPUE는 增加되어 높은 水準에 있다. 資源은 增加趨勢에 있어 安定된 狀態에 있다.

圖 4. 정어리의 漁獲努力量과 CPUE 變動 (指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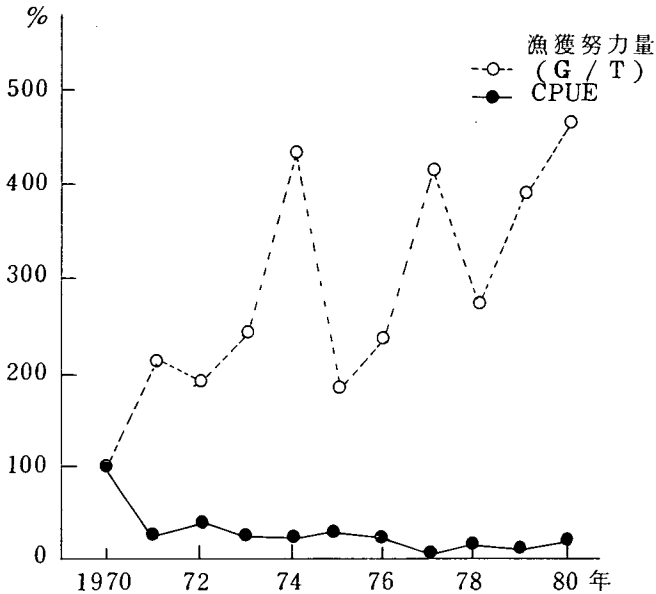
라) 오징어

오징어는 單年生으로서 發生量의 變動은 다음해의 漁況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또한 海況變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漁獲量도 增減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는 減少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漁獲努力量은

增加傾向에 있으나 CPUE는 減少되고 있다.

오징어의 MSY는 37千%으로 推定되었으며, 資源豊度は 年에 따라 變動幅이 크나 전체적으로는 減少傾向에 있다.

圖 5. 오징어의 漁獲努力量과 CPUE變動 (指數)



2) 南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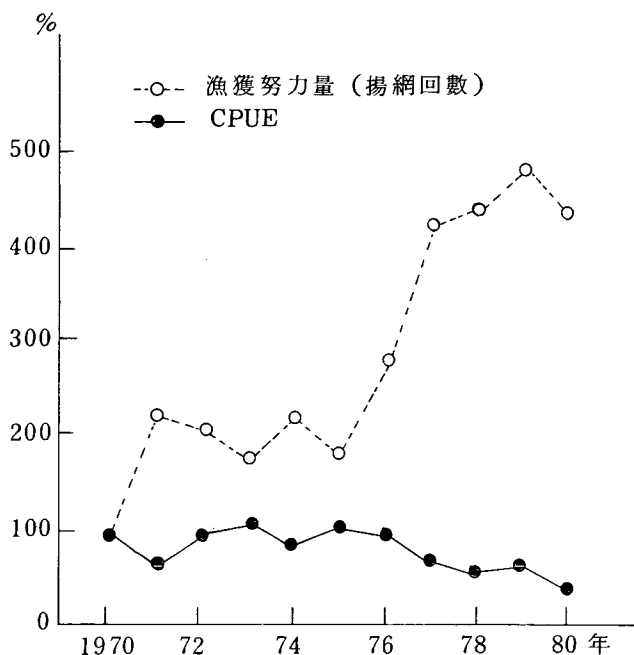
가) 고등어

漁獲量은 增加傾向을 나타내어 최근 10萬%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1980年에는 63千%으로 不況이었으나, 이는 海況變動에 의한 低水溫으로 來遊量 減少에 起引되는 것으로 分析된다.

漁獲努力量 (旋網: 揚網回數) 은 大幅增加되었으나 揚網當 漁獲量은 一定한 水準에서 最近 약간 減少되었다.

고등어의 MSY는 약 10萬%으로 推定되었으며, 資源은 높은 水準에서 安定된 狀態에 있다.

圖 6. 고등어의 漁獲努力量과 CPUE變動 (指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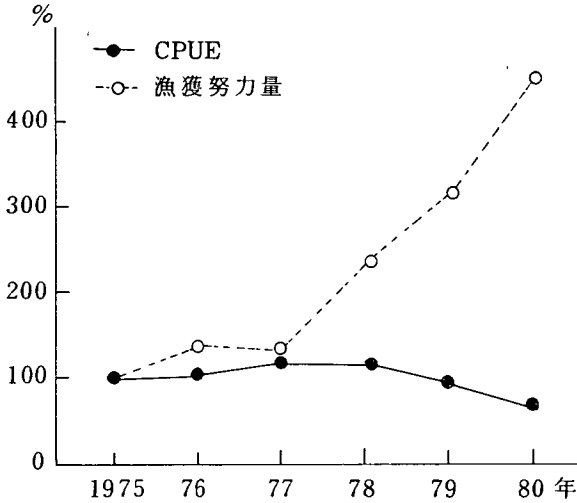


나) 말쥐치

漁獲統計上 記錄은 1975年부터 시작되었으며, 漁獲量은 1975년에는 81千%이던 것이 그 이후 每年 增加되어 最近에는 약 23萬% 漁獲되고 있다.

漁獲努力量은 大幅增加되었으나 揚網當漁獲量은 1978年 이후 약간 減少되었다. 말쥐치의 MSY는 258千%으로 現在의 漁獲量을 약간 上廻하고 있으며, 資源은 높은 水準에서 安定된 狀態에 있다.

圖 7. 말쥐치 漁獲努力量과 CPUE變動 (指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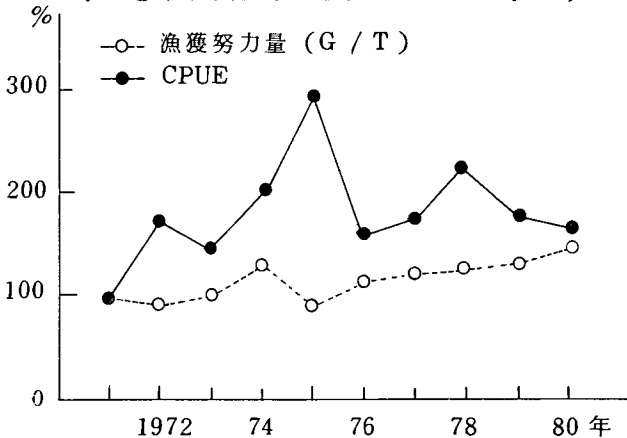


다) 멸 치

漁獲量은 1971年 이후 增加傾向을 나타내다가 최근 7個年間 (1974 ~ 80) 은 13 ~ 18萬% 範圍에서 年에 따라 다소의 변동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一定한 水準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漁獲努力量은 增加傾向을 보이고 있으며 CPUE는 年에 따라 變動幅은 크나 대체적으로 一定한 水準을 유지하고 있다. 멸치의 MSY는 167千%으로 推定되었으며, 資源은 安定된 狀態에 있다.

圖 8. 멸치의 漁獲努力量과 CPUE變動 (指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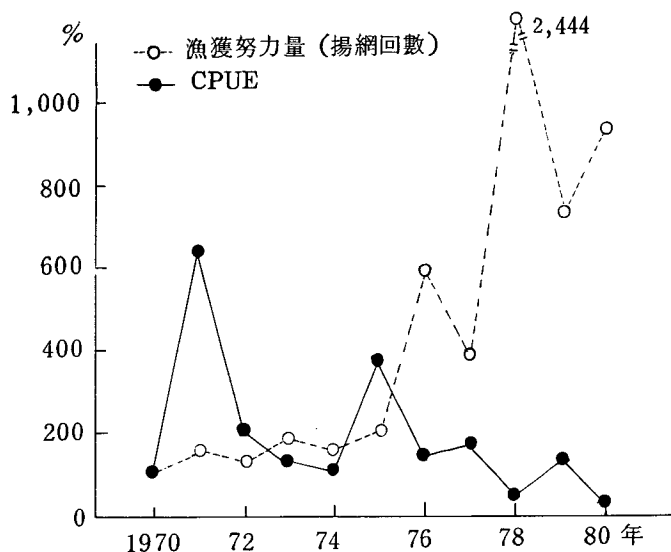


라) 전갱이

漁獲量은 1965年 26千ㄱ을 最高로 그 이후 減少되어 1970 ~ 80年間은 0.6 ~ 9千ㄱ 水準으로 1萬ㄱ을 上廻하지 못하고 있으며 年變動이 심하다.

漁獲努力量은 增加傾向에 있으나 CPUE는 減少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전갱이의 MSY는 7千ㄱ으로 推定되었으며, 資源은 減少狀態에 있다.

圖 9. 전갱이의 漁獲努力量과 CPUE變動 (指數)



3) 西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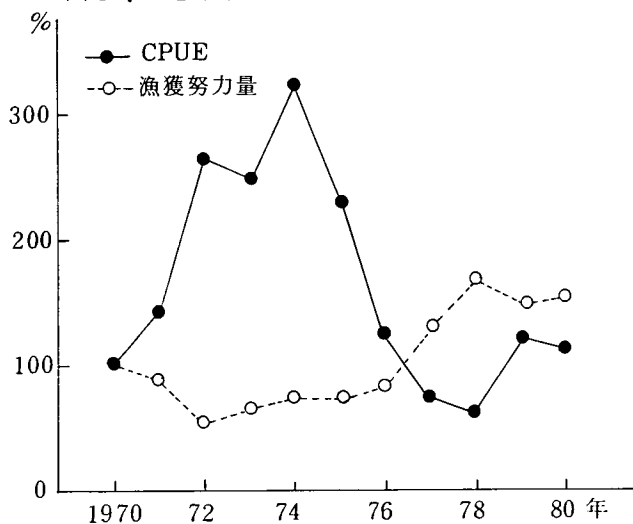
가) 갈 치

漁獲量은 1970年 69千ㄱ에서 매년 크게 增加되어 1974年에는 166千ㄱ을 最高로 그 이후 減少되다가 最近 (1979 ~ 80)에는 12萬ㄱ을 유지하고 있다.

漁獲努力量은 1972年 이후 增加傾向에 있으나 CPUE는 74年을 最高로 그 이후 1978년까지 減少되다가 1979 ~ 80年은 약간 增加되었다.

갈치의 MSY는 128千ㄱ으로 推定되었으며, 資源은 주의를 요하는 狀態에 있다.

圖 10. 갈치의 漁獲努力量과 CPUE變動 (指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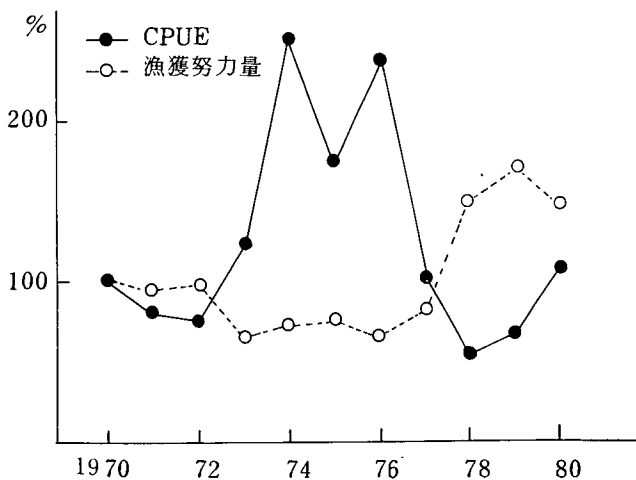
나) 참조기

漁獲量은 1970年 이후年間 25 ~ 54 千 $\%$ 으로 年에 따라 增減을 반복하면서 거의 一定한 水準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漁獲努力量은 1976年까지 약간 減少傾向을 보였으나 그 이후 大幅增加되었으며, CPUE는 76年 이후 大幅減少되었다.

참조기의 MSY는 47 千 $\%$ 으로 推定되었으며, 資源은 減少狀態에 있다.

圖 11. 참조기의 漁獲努力量과 CPUE變動 (指數)



4. 展 望

가. 東 海

정어리와 꽁치 資源은 安定 또는 平衡狀態에 있으나 명태資源은 最近의 減少傾向으로 보아 資源動向에 주의를 요하며, 오징어는 年變動이 심하나 減少狀態에 있다.

나. 黃海・東支那海

고등어, 말뚝치, 멸치 資源은 安定된 平衡狀態에 있으나, 갈치 資源은 주의를 요하는 狀態에 있고, 전갱이, 참조기 資源은 減少狀態에 있다.

5. 結 論

1. 淨魚資源은 海況條件에 영향을 많이 받고 漁場에의 移入과 移出이 심하여 漁況의 年變動이 심하나 오징어와 전갱이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資源은 安定狀態에 있다.
2. 底魚資源은 한정된 漁場內에서 漁獲努力量의 過多投與로 資源은 注意 또는 減少狀態에 있으며, 또한 小型魚의 漁獲比率이 높은 點은 資源恢復에 不利하다는 點을 고려한다면 今後 資源學의 側面뿐만 아니라 社會經濟的 側面과 國際的인 問題를 考慮하여 綜合的인 對策이 要望된다.

附表 1. 沿 近 海 漁 業 漁 獲 量

단위 : ㄱ

年 度 別	沿 岸 漁 業	近 海 漁 業	合 計
1970	525,792	198,954	724,746
71	505,627	259,248	764,875
72	664,459	292,920	957,379
73	752,374	310,882	1,063,256
74	919,198	345,661	1,264,859
75	864,039	352,343	1,216,382
76	839,414	415,681	1,255,095
77	811,886	494,183	1,306,069
78	837,114	523,548	1,360,662
79	593,950	818,339	1,412,289
80	520,350	849,974	1,370,324

附表 2 . 漁業區分別漁獲量

단위 : ㄱ

14

年度別	一 般 漁 業								
	저인망	선망	부망	자망	인망	일본조	연승	포패·채조	정치망
1970	181,502	37,063	108,062	113,138	20,692	72,397	30,356	89,636	14,250
1971	215,327	63,557	109,159	125,047	33,904	35,984	19,796	90,953	16,787
1972	241,724	79,188	136,899	163,614	55,814	54,465	24,917	102,824	31,901
1973	267,361	79,866	162,432	143,016	69,107	45,269	35,580	107,046	42,954
1974	306,672	89,271	232,551	189,976	83,960	42,736	40,938	119,891	73,888
1975	330,125	80,462	223,253	158,769	103,434	49,182	25,060	131,995	53,729
1976	322,604	130,187	219,015	136,680	70,976	49,082	15,356	121,314	52,651
1977	349,596	171,061	213,004	134,080	82,223	18,885	29,756	128,619	54,158
1978	371,706	183,759	235,395	123,001	117,487	20,853	13,996	111,967	73,895
1979	358,528	193,895	270,673	99,531	138,307	28,172	17,868	98,093	99,475
1980	333,030	222,490	268,395	98,479	107,676	46,909	20,492	113,726	80,395

단, 1980 년은 분기별 어업생산량 통계치.

附 表 3. 土 産 魚 種 々 漁 獲 量

단위 : ㄱ

魚種 年度	꽁 치	명 태	정 어 리	오징 어	고 등 어	말뚝 치	멸 치	전갱 이	갈 치	참조기
1970	25,036	13,418	101	72,142	38,256			883	69,082	31,764
1971	30,592	11,241	138	37,625	60,599		66,904	8,904	82,868	24,554
1972	38,544	40,492	315	52,749	78,969		104,174	2,753	110,309	25,352
1973	34,148	42,628	3,689	44,152	74,150		95,572	2,089	124,150	24,947
1974	31,723	64,512	194	31,354	80,649		173,457	1,511	166,391	54,130
1975	25,958	59,862	3,555	37,238	70,123	81,394	175,451	6,563	120,078	40,056
1976	42,121	88,102	11,154	45,227	107,382	114,671	126,202	7,088	75,559	45,456
1977	23,175	122,851	50,299	18,119	113,051	128,098	140,842	5,431	72,032	26,156
1978	21,744	104,318	53,829	18,440	99,519	199,920	183,211	3,948	86,065	25,084
1979	17,178	79,872	47,177	26,123	120,283	230,298	171,539	6,716	120,723	34,754
1980	12,395	96,384	38,282	48,490	62,690	229,230	169,653	565	119,980	48,843

沿近海漁業의 改善方向

朱 尤

*

1. 序 言

우리나라 水産業은 60年代 이후 食糧増産, 雇傭増大, 外貨獲得이란 政策目標에 맞춘 施策에 따라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이나, 他産業에 비해 落後性은 오히려 심화되어가고 있으며, 더우기 최근에는 오일쇼크, 200海里 經濟水域의 設定여파등으로 인해 水産業이 停滯現象마저 보이고 있다. 이것은 水産物 自給率의 저하, 漁業人口의 減少 및 漁家所得의 相對的 墜落등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 水産業은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는 새로운 方向의 水産業施策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80年代에 대처한 우리 沿近海漁業의 개선책을 論하기에 앞서, 먼저 沿近海漁業의 政策目標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政策目標은 첫째 水産物의 需給安定, 둘째 構造改善을 통한 漁業近代化, 셋째 漁家所得増大와 漁村建設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水産業 政策目標의 하나였던 食糧増産은 최근 들어 한계에 부딪친 감이 있다. 總漁獲量은 76年 이래 停滯狀態에 머물러, 지금껏 240萬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沿近海漁獲量도 마찬가지로 수년간 140萬 ㎏대에 머물러 있다.

다만 淺海養殖生産量이 아직은 增加勢로 80年 54萬 ㎏에 이르렀다. 앞으로 漁獲量의 增加는 조금씩이나마 이루어질 것이나, 人口 및 所得増大

* 韓 國 農 村 經 濟 研 究 院 水 産 開 發 研 究 室 長.

에 따른 水産物의 需要增加는 生産量增加를 앞지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계에 부딪친 生産측에만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需要측에도 관심을 갖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水産物의 需給安定이란 食糧増産, 즉 漁獲量増大는 물론 輸出入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国内需要를 위하여 輸出이 제한되거나 輸入까지도 이루어 지고 있는 現實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과거의 雇傭増大政策은 당시로서는 2次, 3次産業의 미비로 많은 數의 漁民을 포용하는 生計漁業의 유지도 의의가 있어 零細漁業 選好型政策이 필요했으나, 최근의 漁業人口減少는 점차 漁業生産活動에 지장을 줄 만큼 심화되어 가고 있어, 이제는 雇傭増大效果에서 構造改善을 통한 漁業近代化 政策目標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零細漁業選好型 政策이 아니라 漸進的이긴 하나 궁극적으로는 比較優位 競爭型 水産政策의 구현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水産政策當局의 基本発想은 落後産業의 保護였다. 즉 水産業은 動物性 蛋白質供給源으로 필수적인 産業이나 他産業에 비해 落後하니까 保護가 필요하다는 論理이다. 거기까지는 남득이 간다고 하더라도, 水産業内部에 들어와서도 상호비교에서 零細한 漁業측에 保護의 벽을 쳐줌으로써 落後漁業의 발전도 이루지 못했음은 물론 成長漁業의 發展속도도 늦추게 함으로써 水産業全體의 成長沮害要因으로 作用하게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같은 漁場에서 같은 魚種을 대상으로 두 漁業이 대립할때, 단순히 상대적 大漁業이라 해서 전부 몰아 낼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나마 적어도 경쟁할 수 있는 操業의 권리는 인정해 주는 方向으로 施策이 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外貨獲得優先政策은 당시 經濟開發의 施行에서 요구되는 막대한 外貨의 供給源으로서 水産物輸出의 중요성이 있었고, 또 62年만 해도 우리나라 總輸出額의 21.7%수준까지 水産物이 담당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몇년전부터 이미 内需用水産物이 輸入되고 있고 해서 적어도 沿海漁業에서는 앞으로 外貨獲得보다는 漁家所得増大 및 福祉漁村建設에 政策의 중점을 두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輸出促進 혹은 輸出제한의 物理的 強制規定이 아니라 輸出과 内需를 市場경쟁에 맡

겨 漁家所得에 이로운 쪽으로 결정되도록 政策이 구현됨을 뜻한다.

2. 水産物の 需給安定

가. 漁獲量

우리나라 漁獲量은 60年代이후 매년 增加만을 보이다가 總漁獲量에 있어서는 78年 처음 前年對比 漁獲量減少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고, 沿近海漁業에서는 75年 처음으로 漁獲量이 감소하고, 79年 史上最大인 1,414千ㄲ까지 올라갔으나, 80年 다시 한번 前年對比 減少한 1,373千ㄲ이 되었다. 이는 近海漁業 漁獲量의 增加에도 불구하고 沿岸漁業 漁獲量의 큰 減少에 기인한다. 그러나 淺海養殖生産量은 계속 增加하여 80年 541千ㄲ으로 史上 最大生産量을 보였다. 이같은 沿近海 漁獲量 變動趨勢는 韓·日·台灣이 거의 비슷하다. 즉 이들 3國이 모두 沿岸漁業은 75年경 이후 漁獲量이 정체상태에 있고 近海漁業은 微增勢에 있다. 그러나 淺海養殖業은 日本은 停滯인데 반해 韓國, 台灣은 아직 增加勢에 있다. 이는 沿近海漁業은 이미 限界生産量水準에 육박했으며, 단지 淺海養殖業은 아직 약간의 開發여지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우리나라 淺海養殖 生産量增大에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니다. 淺海養殖生産量은 70年代이후 生産量이 급신장하여 80년에는 541千ㄲ으로 總漁獲量 2,411千ㄲ의 22.4%이나 차지하게

表 1 漁獲量推移

單位：千ㄲ

	1972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總漁獲量	1,344	2,135	2,407	2,421	2,354	2,422	2,411
沿近海漁業	958	1,209	1,257	1,308	1,363	1,414	1,373
淺海養殖業	160	351	411	491	391	480	541
遠洋漁業	224	566	724	596	566	486	458
內水面漁業	1	9	15	26	33	41	39

되었으나 養殖品種面에서는 최근까지 개선된 점이 없이 貝類와 海藻類 몇 品種에 국한되어 있다. 즉 80 年の 경우 貝類의 畧(173 千%), 홍합(61 千%), 그리고 海藻類의 미역(196 千%), 김(56 千%)의 4 大品種이 全 淺海養殖生産量の 90.0 %를 차지함으로써, 이들 4 大品種은 過剩生産의 우려가 있고, 其他品種은 技術 및 經濟性이 아직 大量生産을 위한 水準까지는 올라와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들 大量生産品種의 需要源을 開發하든지 新品種의 大量生産 체제를 갖추지 않는 한 淺海養殖 生産量の 획기적 增大에도 한계가 있다.

나. 國內 水産物需要

國內 農業食糧資源中 自給하고 남아 大量 輸出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品目は 드물다. 그러나 水産物은 解放 이후 지금까지 自給하고도 輸出餘力이 있어 막대한 外貨를 벌어들여 왔다.

水産物 輸出品目中 최근에 遠洋漁業 比重이 늘어나긴 했으나 아직도 沿 近海漁業 比重이 높아 80 年の 경우 總水産物 輸出額 871.4 百萬달러 中 沿近海漁業分은 407.6 百萬달러로 46.8 %가 된다.

우리나라의 水産物 輸出餘力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이는 人口增加 및 所得增大에 따라 高級魚를 포함한 水産物の 需要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

表 2 水産物 需給變化

單位：千%

		1977	1980
供 給	生 産	2,421	2,411
	輸 入	15	41
合 計		2,436	2,452
需 要	內 需	1,665	1,756
	輸 出	771	696
自 給 率		145 %	137 %

나, 生産増大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77年 水産物 自給率 (總生産量 / 国内消費量)은 145 %이었으나, 점차 떨어져 80년에는 總生産量 2,411 千%에 国内消費量은 内需用 水産物輸入 2 千%을 포함하여 1,756 千%으로 自給率は 137 %에 이르렀다. 물론 일부 선택된 魚種에 국한된 사항이기는 하나 그동안의 水産施策에 나타난 현상을 보아도 内需増大로 인한 輸出制限, 内需用 水産物 輸入의 變遷과정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69年 戰略輸出魚種이라 하여 国内需要를 억제하고, 輸出에 역점을 둔 施策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69年째 이미 内需가 輸出에 지장을 줄 정도로 需要量, 価格面에서 경쟁이 될 만큼 水産物の 内需圧力이 커졌음을 뜻한다. 이처럼 政策的으로 内需를 억제하고 輸出을 장려하다가, 드디어 77년에는 輸出制限魚種이란 施策이 나왔고 이 施策으로도 힘들어 이듬해인 78년부터는 드디어 内需用 水産物 輸入이 시작되었다.

世界 第 1 位の 水産国이라는 日本이 73年이래 自給率が 100 %이하로 떨어져 79年현재 全動物性 蛋白質 中 水産物 比重이 45.4 %밖에 안되는데도 自給率 92.8 % 水準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79年 全動物性 蛋白質 中 水産物 比重이 54.2 %로 높고, 앞으로도 畜産物生産의 어려움으로 水産蛋白質 比重을 5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에서 自給率が 점차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물론 水産物 需要増大는 漁獲量増大로 대처하고, 다음으로 遠洋漁場에서의 開發輸入으로 대처하며, 그래도 모자라면 直輸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食品의 기호성은 쉽게 바뀌지 않은 바 아무래도 沿近海魚種의 選好度가 높을 것이므로 沿近海漁場의 適正利用에 관한 노력은 가일층 강구되어야 한다.

다. 漁 場

우리나라(南韓)의 陸地面積은 100 千^{km}로 世界国別 順位 103 位에 불과한 협소한 領土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가 周辺水域에 200 海里 經濟水域을 設定할 경우의 넓이는 陸地面積의 2.6 倍에 해당하는 263 千^{km}로 世界順位 47 位가 된다. 79年 우리나라 總漁獲量은 2,162 千%(FAO統

計)로 200 海里 經濟水域面積當 8.2 $\text{ㄱ}/\text{km}^2$ 를 生産한 끝이다.

表 3 国別 陸地面積과 200 海里 經濟水域 및 總漁獲量

	陸地面積 千 km^2 (A)	經濟水域面積 千 km^2 (B)	1979 年 總 漁 獲 量 千 ㄱ (C)	B / A %	C / B $\text{ㄱ}/\text{km}^2$
全 世 界	135,830	65,253	71,287	48	1.1
韓 国	100 (103)	263 (47)	2,162 (9)	264	8.2
北 韓	122 (94)	98 (77)	1,330 (16)	80	13.6
中 共	9,594 (2)	728 (22)	4,054 (3)	7	5.6
日 本	370 (53)	2,916 (7)	9,966 (1)	788	3.4
蘇 聯	22,403 (1)	3,392 (6)	9,114 (2)	15	2.7

() 内 숫자는 世界国別順位임.

물론 위의 總漁獲量에는 遠洋 및 內水面漁獲量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沿近海漁業도 우리의 經濟水域밖에까지 一部 확장진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같은 條件에서의 日本(3.4 $\text{ㄱ}/\text{km}^2$)이나 全世界 平均值(1.1 $\text{ㄱ}/\text{km}^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漁獲量은 漁場面積에 비해 상당히 높은 水準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나라 沿近海 漁場面積은 總 50 萬 km^2 로 추산되며 80 年 沿近海 漁獲量 1,373 千 ㄱ 로 볼때 沿近海 漁場面積當 漁獲量은 2.7 $\text{ㄱ}/\text{km}^2$ 이다.

한편 淺海養殖만을 두고 볼때 80 年 現在 總養殖適地는 1,034 km^2 이고, 이중 76.0 %인 786 km^2 를 養殖漁場으로 利用하여 541 千 ㄱ 을 生産하였다. 이는 養殖漁場面積當 688 $\text{ㄱ}/\text{km}^2$ 로서, 沿近海의 漁撈漁業보다 漁場生産性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아, 栽培漁業, 혹은 沿岸漁場의 牧場化에 궁극적 目標設定을 두는 것도 큰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資源造成 및 管理

우리나라의 沿岸海漁業의 生産量은 60 ~ 70 年代에 크게 增加했다고는 하나, 이는 沿岸海漁場의 拡大와 병행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漁場生産性의 增大는 아니다. 오히려 最近에 들어서면서 漁場拡大에는 制限이 가해지고, 漁船勢力은 계속 增大함으로써 漁獲努力당 生産量の 減少, 漁獲個體의 小型化, 혹은 高齡化, 魚種間의 交替現象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이는 資源枯渇을 나타내는 現象들로 적절한 水産資源管理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資源管理는 水産資源保護令을 중심으로 法制化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우리나라 沿岸海漁業에서는 漁獲量 쿼타制를 제외한 漁船定限數, 禁漁期, 禁漁區, 網目制限 등, 모든 資源管理方案이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管理方案이 과연 變遷하는 資源組成이나 資源量에, 적어도 現 資源分析水準에 맞게끔 강구되어 있느냐는 데 있다. 앞으로는 資源管理도 科學的, 經濟的 最大 持續的 生産量이 나올 수 있게끔 보완 정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資源造成을 위한 魚礁投入, 淺海養殖을 위한 種苗培養事業, 漁場확보를 위한 水質汚染防止, 水産資源保全地區의 확대실시가 요망된다. 그러나 우리 沿岸海漁場은 우리만의 資源管理努力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든, 우리 周边國과 함께 이용하는 共同漁場이므로 궁극적인 資源管理는 이들 國家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루어 지도록 앞으로도 계속 努力하여, 대화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構造改善을 통한 漁業近代化

漁業構造改善政策은 効率性 提高와 漁家所得向上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근본적 政策으로 단기적으로는 높은 費用이 드나,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政策이다.

가. 漁業人口

우리나라의 總漁業人口統計는 發表되고 있으나 아직 漁業別 漁業人口統計는 없다. 그러나 沿岸海漁業人口가 總漁業人口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年別 趨勢變動을 把握하는데는 總漁業人口를 利用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漁業人口, 漁業家口, 漁業從事者數 모두 1967年 이후 減少趨勢에 있는데, 이중 漁業人口의 減少속도가 가장 빠르다.

表 4 漁 業 人 口 推 移

年 度	漁業人口 (千名)	漁業家口 (千戶)	漁業從事者 (千名)	漁業人口 總人口 (%)	漁業從事者 總就業者數 (%)
1967	1,447	242	591	4.9	6.8
1970	1,165	195	368	3.7	3.8
1980	843	157	342	2.2	2.5
1970 ~ 80 年減少率(%)	3.18	2.13	0.07		

第1次 漁業센서스에 나타난 1970年の 漁業人口는 1,165千名이었던 것이 80年 第2次 漁業센서스에서는 843千名이었다. 이는 과거 10年間 年平均 減少率이 3.18%임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總人口에 대한 漁業人口의 比率은 70年 3.7%에서 80年 2.2%로 떨어졌다. 한편 漁業家口數는 70年 195千家口에서 80年 157千家口로, 年平均 2.13%의 減少率을 보였다. 이처럼 漁業人口의 減少率보다 漁業家口數 減少率이 낮은 것은 核家族時代에 따른 家口當 家族數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80年の 漁業家口當 家口員數는 5.37名이 되었다. 漁家口減少가 일반추세이기는 하나 漁業依存度에 따라 다른 바, 漁業經營者家口보다는 雇傭者家口가 빨리 減少하며, 第1種 兼業보다는 專業과 第2種 兼業漁家口가 빨리 減少하고 있다. 이에 따라 漁家口는 經營者化, 第1種 兼業化되어가고 있다. 이는 漁業의 小規模化, 副業化를 의미하며 이같은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表 5 漁業 依存度別 家口数变化(1)

單位：千戶，%

年 度	總 計	漁業經營者家口	漁業雇傭者家口
1970	195 (100.0)	149 (76.6)	45 (23.4)
1979	147 (100.0)	123 (83.4)	24 (16.6)
年減少率 (%)	3.0	2.1	6.7

表 6 漁業依存度別 家口数变化 (2)

單位：千戶，%

年 度	總 計	專 業	第 1 種兼業	第 2 種兼業
1970	195 (100.0)	38 (19.5)	74 (38.1)	82 (42.4)
1979	147 (100.0)	24 (16.4)	71 (47.9)	53 (35.7)
年減少率	3.0	4.9	0.5	4.9

1970 ~ 79 年間 總漁業從事者數는 減少했는데, 이는 40 歲이상 漁業從事者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4 ~ 39 歲 漁業從事者의 대폭 감소 때문이다. 이에 따라 漁業從事者는 高齡化되어 가고 있다.

表 7 漁 業 從 事 者 推 移

單位：千名，%

年 度	合 計	14 ~ 39 歲	40 歲 以 上
1970	368 (100.0)	221 (60.0)	147 (40.0)
1979	299 (100.0)	137 (55.6)	163 (44.4)
年增減率 (%)	△ 2.26	△ 5.19	1.14

漁業人口, 漁業家口, 漁業従事者 모두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같은 減少現象 자체는 勞働生産性 향상이란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効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漁業従事者の 高齢化와 漁業家口の 自営化에 따른 小規模化 및 副業化 現象이다. 沿近海漁業의 發展을 위해서는 良質의 專業의 人力確保가 필요하다. 따라서 營漁後繼者育成은 시의에 적절한 施策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금년부터 시작된 營漁後繼者育成策은 금년 146명을 육성하도록 되었는데, 이는 現 漁村契 1,440個에 비하면 10년에 한 명꼴의 營漁後繼者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계속 확대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나. 漁 船

沿近海 漁船隻數는 70年 49.8千隻이후 減少하여 76年 40.5千隻까지 내려갔다가 그후 다시 增加勢로 돌아 79년에는 42.8千隻이 되었다. 한편 淺海養殖漁船隻數는 66年 8.1千隻이후 계속 增加하여 79年 27.8千隻이나 되었다. 이처럼 沿近海 및 淺海養殖漁船隻數는 최근 增加勢에 있다.

한편 漁業別 隻當屯數를 보면 沿近海漁業은 매년 증가하여 79年 8.77屯/隻이 되었으나, 淺海養殖業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바, 79년에는 1.14屯/隻이었다. 이로보아 沿近海漁船은 大型化되고 있으나, 大型化가 필요없는 淺海養殖漁船은 漁船 크기에 增減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總隻數에 대한 動力船의 比率(動力化率)은 모든 漁業에서 增加하고 있는바, 79년에는 沿近海漁船은 72.0%로, 淺海養殖漁船은 50.3%까지 動力化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動力船 屯當馬力數를 보면, 沿近海 및 淺海養殖漁船에서 모두 계속 增加경향으로 79年 沿近海漁船은 3.94馬力/屯이 되었고, 淺海養殖漁船에는 5.30馬力/屯이 되었다. 이로부터 沿近海漁船은 高馬力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보아 우리 沿近海 및 淺海養殖漁船은 隻數增加, 大型化, 動力化, 高馬力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볼때 漁船勢力이 隻數增加이상으로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이처럼 漁船勢力은 커지고 있으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漁場擴大에 제한이 있으며, 더우기 資源枯竭마저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對備策의 강구가 시

表 8 漁業別 漁船勢力 推移

		1972	1975	1977	1979
總 隻 數 (千隻)	沿 近 海	47.5	43.5	41.1	42.8
	淺海養殖	18.7	21.8	22.4	27.8
總隻当屯數 (屯 / 隻)	沿 近 海	5.22	5.79	6.90	8.77
	淺海養殖	1.12	1.23	1.11	1.14
動 力 化 率 (隻數基準)(%)	沿 近 海	27.5	37.2	55.0	72.0
	淺海養殖	3.7	10.4	24.9	50.3
動力船屯当馬力數 (馬力 / 屯)	沿 近 海	2.71	3.16	3.44	3.94
	淺海養殖	5.08	4.11	4.62	5.30

급하다. 이는 資源管理 및 漁業의 過多競爭을 防止하기 위한 適正漁船의 유지를 뜻한다.

다. 漁港施設

漁港施設은 水産業의 基本施設로서 漁船의 安定收容과 漁獲物의 揚陸處理加工등 漁業 근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漁港施設로는 防波堤, 物揚場 등의 基本施設과 漁獲物 流通 및 給水, 給油, 얼음등의 補給을 포함한 機能施設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漁港은 機能施設은 차치하고라도, 漁船의 安定收容에 필요한 基本施設마저 需要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즉 1,814 個의 全漁港에 필요한 施設은 442 km인데 80年 현재 51.4%인 227 km의 施設만이 완료되어 있다. 물론 漁港建設은 막대한 施設投資가 所要되어 한정된 豫算으로 漁港施設 확충이 어렵기는 하나, 問題点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漁港中에도 가장 중요한 水産庁 管理港의 施設이 가장 미흡하다는데 있다. 水産庁 管理港은 利用範圍가 全國의이며 規模가 큰 第1種 漁港 37 個港과, 漁場開發 및 緊急待避港으로 落島僻地에 위치한 第3種 漁港 24 個港, 計 61 個港이 있다.

表 9 漁 港 施 設 現 況

漁 港 区 分	漁港數 (個)	總施設計 劃(A)(km)	1980 年 까지 施設(B)(km)	比 率 (B / A) (%)
合 計	1,814	441.7	227.2	51.4
水産庁管理港(第 1, 3 種港)	61	64.6	22.1	34.3
市道管理港(第 2 種港)	355	69.3	35.7	51.5
非指定港(小規模港)	1,398	307.8	169.4	55.0

水産庁 管理港 61 個港에 必要한 施設은 防波堤 25.0 km, 物揚場 23.9 km 등 總 64.6 km가 必要한데 80 年까지 施設을 完了한 것은 總 22.1 km로 実績은 34.3 %로 全漁港 基本施設 平均 51.4 %에도 못미치고 있다.

라. 試驗研究 및 漁業技術指導

水産業의 試驗研究는 주로 水産振興院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水産振興院은 올해로 60 週年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에서 유례를 보기도 못한 오랜 研究院으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水産業發展에 기여한 바 컸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볼때 水産振興院은 그동안 建物, 現代의 試驗器機, 試驗調査船 확보, 研究員 TO 확보 등 소위 hardware에 신경을 쓰다보니 研究実績蓄積이란 software에 미흡한 점이 없지않았나 생각된다. 더우기 漁業環境이 점차 어려워 지리라 예상되는 80 年代를 맞아 試驗研究의 重要性이 새삼 강조되는 이때, 水産振興院의 활성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유일무이의 水産研究機關으로의 水産振興院施設이 國際水準에 비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施設拡充, 研究員 優待方案도 강구되어야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研究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外國 研究機關과의 접촉확대, 水産振興院 支院의 拡大改編에 따른 상호보완적, 경쟁적 研究熱고취, 研究 incentive 制度 도입이 필요하다.

한편 漁業技術指導問題를 볼때 漁業은 날로 科学化 되고 있는데 반해 漁業從事者는 오히려 高齡化되고, 漁業은 小規模化, 副業化됨으로써 漁業의 技術指導 需要는 더욱 增大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漁家所得増大와 福祉漁村建設

가. 漁家所得

漁家 平均所得은 79 年 1,923 千원으로 農家所得 2,227 千원의 86.3 % 에 불과했으나, 1980 年에는 2,596 千원으로 農家所得 2,693 千원의 96.4 %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는 80 년에 農業에서 예년에 보기도 못한 흉년의 來到로 農家所得이 낮았기 때문이지 구조적으로 農家所得의 96 %라는 얘기는 아니다. 또한 80 년의 漁家平均所得은 都市勤勞者 家口所得인 3,205 千원의 81.0 % 水準에 불과했다.

漁家平均所得이 이처럼 農家나 都市勤勞者 家口所得보다 낮은 것은 漁家中 漁船 非使用家口 및 無動力船 使用家口 階層의 소득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養殖漁家와 動力船 使用漁家の 所得은 全漁家 平均보다 높다. 따

表 10 家 口 当 所 得 比 較

單位：千원

	1979	1980
漁 家 平 均 所 得	1,923 (100)	2,596 (100)
漁船非使用家口	1,456 (76)	1,980 (76)
無動力船使用家口	1,750 (91)	2,120 (82)
養 殖 業 家 口	2,321 (121)	2,794 (108)
動力船使用家口	2,003 (104)	3,353 (129)
農 家 所 得	2,227 (116)	2,693 (104)
都 市 勤 勞 者 所 得	2,630 (137)	3,205 (123)

()内는 年別 漁家平均所得을 100 으로 보았을 때의 比率임.

라서 漁船 非使用家口의 養殖漁家化, 無動力船使用漁家の 動力船 使用漁家化는 漁家所得増大의 方策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淺海養殖漁業 生産量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 養殖品種의數가 極히 制限되어 있는 현실에서 技術水準이 낮고 資本力이 없는 漁船 非使用漁家の 淺海養殖漁家化는 自然히 現 養殖品種의 양식에의 첨가라는 結果를 낳아, 현 양식품중 需要의 開發을 延遲하지 않는 한 또 하나의 어려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無動力漁船 漁家の 動力漁船 漁家化도 漁船勢力에 비해 資源의 한계성이 있으므로 資源造成이 획기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漁家중 所得이 낮은 이들 漁船 非使用 漁家 및 無動力船 漁家は 漁業所得増大를 통하기 보다는 漁業外 所得増大를 통해 漁家所得을 増大시키는 方案의 강구가 필요하다.

韓・日間 漁家所得중 漁業所得을 79年 資料로 비교해 볼 때 韓國은 總漁家所得 1,923千원의 67%인 1,296千원이 漁業所得이고 漁業外所得은 33%인 627千원이었다. 漁業外所得 627千원중 가장 큰 몫은 農業所得으로 301千원이 포함된다.

한편, 日本의 경우는 漁家總所得은 4,361千円이고 이 중 漁業外 所得이 45%인 1,968千円이나 된다. 즉 漁家所得중 漁業外 所得比率이 韓國은 33%에 불과하나 日本은 45%나 되어 日本이 우리나라보다 漁家所得중 漁業外 所得比率이 12% 포인트가 높다.

表 11 1979年 韓・日 漁家所得対比

	韓 国(千원)	日 本 (千円)	日本 / 韓國 (倍)
漁 家 所 得 合 計	1,923 (100)	4,361 (100)	5.0
漁 業 所 得	1,296 (67)	2,393 (55)	4.0
漁 業 外 所 得	627 (33)	1,968 (45)	6.9

註 ; 100 円 = 219 원으로 계산.

漁家所得増大를 위해 漁業所得増大의 方法을 강구하는 것이 正道이기는 하나, 漁業成長을 促進하는 것이 오랜 시간과 많은 投資를 필요로 하는 構造改善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漁業構造改善事業을 추진하는 일방 漁家所得増大의 捷径인 漁業外 所得, 즉 겸업소득증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단, 漁業外 所得増大 政策은 漁家所得増大를 위한 效果的인 한 手段이기는 하나, 漁業의 副業化와 零細經營構造를 持續시키는 逆機能 또한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養殖漁家와 動力船 使用漁家中 專業漁家は 漁業所得을 중심으로 漁家所得増大策을 강구하고, 漁船 非使用漁家 및 無動力船 使用漁家は 漁業外所得을 중심으로 漁家所得 増大策을 강구토록 한다.

漁家所得 増大策으로 또 하나 중요한 點은 漁家所得의 安定化에 있다. 바다를 生産의 場으로 생활하는 漁家は 바다가 變化無常한 만큼 生産量의 기복이 심하고 이에따라 漁家所得이 불안정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生産手段인 漁船, 養殖施設物은 물론 심지어는 生命까지 잃는 수가 많다. 이러한 生産手段이 소실될 경우 영세한 그들이 再起하기란 至難한 일이다. 따라서 이들의 所得安定을 위해 災害補償制度의 改善 혹은 新設이 시급히 要求되고 있다.

즉, 漁撈漁業에서의 船員, 漁船共濟의 계속적 확충과 養殖共濟의 新設은 漁民의 所得安定은 물론 所得増大에도 큰 몫을 할 것이다.

나. 水協의 民主化

漁民이 못 사는 理由의 하나로 漁民을 위한 善意의 壓力團體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아래로 부터 울려 나오는 목소리를 조화시키는 것이 民主主義의 長点일진데, 현 體制의 水協은 漁民의 權益을 保護하기에는 未洽한 감이 있다. 따라서, 現 与件을 감안한 長期的 眼目에서의 段階的 水協의 民主化는 水産業의 重要性을 부각시키고 漁民의 궁지를 높이며 풍요한 福祉漁村을 이룩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다. 福祉漁村

第5共和国 国政目標의 하나가 福祉社会建設이다. 福祉社会는 国土의 均衡的 發展에 의해 이루어 지며, 여기에 福祉漁村 建設이 포함됨은 再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사실 해마다 많은 漁民이 漁村을 등지는 이유는 所得水準이 낮은 것도 있으나 落後한 生活与件, 예를 들면 教育, 保健, 道路, 交通, 通信등 소위 下部構造의 열세로 정든 故鄉을 등지고 있다.

下部構造 改善事業은 漁民 自身들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生活与件이 改善되는 点도 重要하나, 무엇보다도 이런 与件의 助成은 農漁村型 새마을工場을 유치하는데 活力素로 作用하게 되고, 工場誘致는 힘들더라도 적어도 近隣도시에서의 就業機會 擴大에 도움은 되어, 이것이 영세어민의 兼業所得 增大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

沿近海漁業의 經營合理化 方案

張 設 鎬*

1. 序 言

우리나라의 沿近海漁業은 1957年 印度洋 참치 延繩漁業 試驗操業 이후 急成長하기 시작한 遠洋漁業에 밀려 한때는 政策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느낌이 없지도 않으나 최근 資源國粹主義와 海洋分割思想이 급팽창하여 沿岸諸國은 領海幅을 擴大하거나 200 海里 經濟水域을 宣布하게 되고, 그 결과 遠洋漁場과 外國領海漁場의 縮小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우리의 領海로서의 沿近海漁場과 沿近海漁業은 새로이 脚光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볼 때 현재 이러한 外部環境의 變化에 대한 適應이라는 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水産物의 國民保健上 차지하는 重要度에 비추어 우리의 沿近海漁業도 새로운 發展方向을 모색해야 할 時點에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沿近海漁業의 發展方向의 일환으로서 沿近海漁業의 經營實態와 問題點을 分析한 후 經營合理化를 위한 諸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2. 沿近海漁業의 經營實態 및 問題點

가. 經營體規模의 零細性

1979年 현재 우리나라 沿近海漁業 經營體數는 總 42,860 個所인데, 漁業部門別로는 沿岸漁業 經營體數가 36,366 個所, 近海漁業 經營體數가

*釜山水産大學 敎授.

658 個所, 淺海養殖漁業 經營體數가 5,836 個所로서 沿近海漁業이라해도 經營體數의 面에선 비교적 資本規模가 큰 近海漁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다. 뿐만 아니라 沿近海漁業經營體에서 保有하고 있는 漁船現況을 보아도 전체의 85.6 %가 5 % 미만의 規模를 가지고 있으며, 隻當 平均噸數 5.6 % 는 遠洋漁船 隻當 平均噸數의 1/96, 우리나라 全漁船 隻當 平均噸數의 1/2에 불과한 실정에 있는데 <表 1>,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沿近海漁業 經營體의 零細性을 입증하는 좋은 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零細한 規模의 經營體로서는 沿近海漁業의 發展, 나아가서는 沿近海漁業 從事者들의 所得向上을 기대하기 힘들다는데 있다.

表 1. 漁業部門別 漁船勢力 (1979 年)

單位: 隻, %

	合 計	遠 洋 漁 業	沿 近 海 漁 業	其 他
隻 數	74,556	646	73,280	630
噸 數	752,761	310,509	409,704	32,548
隻當平均噸數	10.1	480.7	5.6	51.7

資料: 農水産部, 「水産統計年報」, 1980.

나. 沿近海漁場의 縮小

우리나라의 沿近海漁場, 특히 淺海養殖漁場은 그동안 干拓事業 등의 추진으로 인하여 상당히 縮小되어 왔는데 <表 2>, 앞으로도 이들 事

<表 2> 干拓事業 實績

單位: 個所, ha

年度 區分	19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地區數	45	34	10	25	44	9	31	37	7	12	5
面 積	1,555	3,023	1,210	1,667	1,389	702	4,345	4,611	479	800	225

資料: 農水産部.

表3 沿 近 海 漁 業 の 生 産 性 指 標

單位：千圓，%

34

年 度 漁 業	分析指標 勞 動 裝 備 率 (金 額) (有 形 固 定 資 產) 從 事 者 數			漁 船 1 噸 當 賣 出 額 (賣 出 額) 平 均 漁 船 噸 數			漁 船 1 噸 當 漁 業 利 益 (漁 業 利 益) 平 均 漁 船 噸 數			附 加 價 值 率 (附 加 價 值 額) 賣 出 額 × 100		
	1978	79	80	78	79	80	78	79	80	78	79	80
沿 岸 漁 業	670	1,289	1,338	640	1,084	1,714	883	289	390	63.2	66.4	58.9
斗 式 流 網	1,420	1,483	1,712	1,045	681	1,185	1,069	△ 28	290	67.1	43.2	63.0
收 良 式 大 謀 網	1,051	1,104	1,459	3,317	3,759	3,377	1,555	1,610	535	76.5	79.5	57.9
小 底 網	688	1,004	1,103	1,141	2,896	3,492	2,995	1,544	1,012	69.1	83.3	73.3
2 艘 引 機 船 底 引 網	4,178	5,750	6,673	909	1,202	1,507	183	112	150	49.9	37.9	36.6
1 艘 引 機 船 底 引 網	2,845	3,498	3,932	3,635	969	1,133	1,138	15	87	56.9	33.6	37.8
東 海 區 機 船 底 引 網	1,647	2,803	2,944	2,580	1,041	2,012	1,436	△ 78	190	53.7	30.5	54.0
西 南 區 機 船 底 引 網	2,030	2,073	2,254	2,103	891	1,508	898	234	388	55.8	61.2	56.4
東 海 區 三 号	2,955	3,739	3,663	3,816	1,526	2,624	1,279	375	422	57.3	54.9	48.0
近 海 捕 鯨	4,425	6,019	6,097	3,037	721	1,433	772	228	527	61.5	64.7	61.7
大 型 旋 網	3,452	6,285	6,164	2,608	990	1,578	1,327	41	145	32.2	36.1	36.3
機 船 權 現 網	1,630	1,719	2,093	818	823	855	773	67	48	47.4	48.8	47.5
近 海 鮫 鰈 網	3,919	6,450	6,557	3,495	813	1,085	969	13	170	61.1	36.2	46.0
潛 水 器	822	1,060	1,472	2,892	4,195	4,930	4,800	1,173	1,467	82.1	68.7	71.4

資料：水協中央会，「漁業經營調查報告」1979～1981。

業이 더욱 擴大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어, 이렇게 되면 淺海養殖事業이 상당히 위축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이러한 沿近海漁場의 縮小는 沿近海漁業의 生産基盤의 縮小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對策이 없이는 沿近海漁業의 發展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 漁業生産性の 減少

漁業生産性を 나타내는 몇 개의 指標를 이용하여 沿近海漁業의 최근 3年間の 漁業生産性を 살펴보면 〈表 3〉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즉 從事者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勞動裝備를 이용하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勞動裝備率(金額)은 全沿近海漁業에서 대체로 增加하고 있으나, 漁船 1噸當 賣出額과 漁船 1噸當 漁業利益은 1978년에 비해 79년에는 대폭 減少하였다가 80년에 다소 회복되었으나 78年の 水準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다. 또 附加價值率도 일부 漁業에서는 保畧勢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減少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沿近海漁業의 生産性が 減少하고 있는 데는 여러가지의 原因이 있겠으나 人爲的인 原因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水質汚染과 濫獲을 들 수 있다. 水質汚染에 대해서는 現行關係法令만 해도 水産業法, 環境保全法, 海洋汚染防止法 등 여러가지가 있고, 各法令別로 구체적인 事項을 規定하고 있어, 制度上으로는 그런대로 整備가 되어 있는 것 같으나 그 施行上에 많은 問題가 있다. 즉 法的으로는 엄연히 금지하고 있는 事項에도 團束人力이 부족하거나, 擔當者들의 專門知識의 缺如로 漁民들만 일방적으로 被害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濫獲으로 인한 生産性 減少는 再言할 필요가 없는데, 몇몇 沿近海魚種은 濫獲으로 인한 資源枯渴現象이 나타나고 있어 問題가 되고 있다.

라. 漁業資本 構成의 不健全

우리나라 沿近海漁業의 資本構成을 몇 개의 指標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與信者의 債權回收의 安定性을 나타내는 負債比率은 漁業에 따라

表 4 沿海漁業의 財務流動性 指標

單位：%

漁 業 分析指標	負債比率	自己資本比率	固定比率	固定長期適合率	借入金依存度
	$\frac{\text{負債}}{\text{自己資本}} \times 100$	$\frac{\text{自己資本}}{\text{總資本}} \times 100$	$\frac{\text{固定資産}}{\text{自己資本}} \times 100$	$\frac{\text{固定資産}}{\text{自己資本} + \text{固定負債}} \times 100$	$\frac{\text{外部借入金}}{\text{總資本}} \times 100$
沿岸漁業	36.5	73.6	122.2	106.2	26.4
甘 刁 流 網	56.8	64.9	138.7	126.5	35.1
改良式大謀網	45.2	69.1	122.5	118.8	30.9
小 謀 網	49.7	66.4	125.4	115.6	32.9
2艘引機船底引網	61.0	62.2	145.7	112.0	37.8
1艘引機船底引網	52.8	65.7	134.9	116.8	34.3
東海區機船底引網	46.8	68.5	130.9	116.7	31.5
西南區機船底引網	51.0	67.0	135.3	119.6	33.0
東海區 旦 量	45.7	69.6	117.4	98.4	30.4
近海捕鯨	30.1	77.4	105.0	85.7	22.6
大型旋網	66.6	60.4	133.3	108.2	39.6
機船權現網	34.9	74.4	114.7	102.9	25.6
近海鮫鰈網	30.9	76.7	112.1	98.8	23.3
潛水器	53.2	65.5	118.7	104.4	34.5

※ 各指標의 數値는 '78年~'80年の 平均値임.

資料：水協中央会, 「漁業經營調查報告」, 1979~1981.

다소 다르나 30.1%~66.6%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00% 이하가 標準比率임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良好한 편이다.

둘째, 資本構成의 適否를 판단하는 代表指標인 自己資本比率도 60.4%~77.4%로서 비교적 良好하다 (標準比率 50% 이상).

세째, 그러나 固定比率이 105%~145.7%로서 自己資本에 대한 固定資産의 投下比率이 상당히 높은데 (標準比率 100% 이하), 이것은 水産業이 固定設備가 많이 所要되는 産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比率를 점차적으로 낮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네째, 水産業과 같이 固定設備를 많이 필요로 하는 産業에 있어 固定比率과 함께 固定資産에 대한 調達財源의 성격을 나타내는 比率로서 固定長期適合率이 있는데, 이 比率를 보면 85.7%~126.5%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標準比率 100%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높은 편이다.

다섯째, 總資本에 대한 借入金의 比率을 나타내는 借入金依存度도 23.3%~39.6%로서 다소 높다 <表 4>.

水産業은 他産業에 비해 不確實性이 높은 만큼 그 資本의 構成이 더욱 健全해야 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沿近海漁業의 資本構成은 다소 不健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마. 漁業收益性 減少

沿近海漁業의 최근 3年間の 收益性도 몇개의 指標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첫째, 總收益에 대한 總費用의 比率을 나타내는 漁業收支比率은 年度別로 다소 增加하거나, 保合勢를 나타내고 있어 다소 不良한 편이다.

둘째, 漁業利益과 總資本과의 關係를 나타내는 總資本漁業利益率은 年度別로 減少 또는 減少傾向에 있어 不良하다.

세째, 漁業純利益과 總資本과의 關係를 나타내는 總資本漁業純利益率도 減少 또는 減少傾向에 있어 不良하다.

네째, 漁業利益과 賣出額과의 關係를 나타내는 賣出額漁業利益率은 일부 漁業에서는 保合 내지 다소의 增加勢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減

表5 沿 近 海 漁 業 的 收 益 性 指 標

分析指標 年 度		漁業收支比率 $\left(\frac{\text{總費用}}{\text{賣出額}}\right) \times 100$			總資本漁業利益率 $\left(\frac{\text{漁業利益}}{\text{總資本}}\right) \times 100$			總資本漁業純利益率 $\left(\frac{\text{純利益}}{\text{總資本}}\right) \times 100$			賣出額漁業利益率 $\left(\frac{\text{漁業利益}}{\text{賣出額}}\right) \times 100$			自己資本漁業利益率 $\left(\frac{\text{漁業利益}}{\text{自己資本}}\right) \times 100$			資 本 回 轉 率 $\left(\frac{\text{賣出額}}{\text{總資本}}\right) \times 100$								
		1978	79	80	78	79	80	78	79	80	78	79	80	78	79	80	78	79	80						
沿	岸	漁	業	73.9	75.0	80.4	37.1	26.5	28.1	34.8	24.8	24.2	27.8	26.6	22.7	55.0	33.8	37.4	1.33	0.99	1.23				
甘	叉	流	網	82.0	110.7	78.1	20.0	△ 2.8	27.9	17.1	△ 7.1	24.9	21.1	△ 4.1	24.5	26.9	△ 5.1	42.4	0.95	0.67	1.14				
改	良	式	大	謀	網	55.9	59.5	88.5	53.8	56.4	19.1	50.7	53.3	13.9	46.9	42.8	15.8	72.2	82.5	29.6	1.15	1.32	1.21		
小		台	網	59.3	49.3	77.3	70.2	74.9	52.4	66.3	71.2	48.3	43.1	53.3	29.0	95.2	116.7	85.4	1.63	1.41	1.81				
2	艘	引	機	船	底	引	網	83.9	94.2	92.4	27.7	12.8	16.9	22.7	7.9	12.8	20.9	9.4	10.0	42.5	22.0	26.6	1.38	1.37	1.69
1	艘	引	機	船	底	引	網	75.0	101.9	95.0	49.1	2.4	13.7	46.4	△ 2.9	9.0	26.4	1.6	7.9	70.3	4.0	20.6	1.86	1.53	1.79
東	海	區	機	船	底	引	網	80.6	109.6	91.3	48.0	△ 9.4	23.1	45.9	12.0	21.3	20.3	△ 7.5	9.5	65.2	△ 5.1	33.1	2.36	1.26	2.44
西	南	區	機	船	底	引	網	79.6	75.9	75.1	34.6	42.4	62.3	33.7	39.0	60.3	21.0	26.2	25.7	47.0	73.9	89.2	1.65	1.62	2.43
東	海	區	三	量		70.3	76.3	84.5	53.7	47.4	42.3	52.2	44.8	40.8	30.6	24.5	16.1	68.7	80.7	58.7	1.75	1.93	2.63		
近	海	捕	鯨			67.5	73.5	68.0	30.3	24.2	54.2	27.4	20.3	47.2	35.9	31.7	36.8	35.6	35.1	69.2	0.84	0.76	1.47		
大	型	旋	網			93.2	98.2	92.2	10.8	3.7	12.6	9.6	1.6	10.8	7.6	4.1	9.2	16.9	6.8	20.0	1.43	0.90	1.37		
機	船	權	現	網		92.0	95.4	98.3	9.8	7.8	5.4	7.1	43.6	1.6	11.2	8.2	5.6	12.3	10.8	7.6	0.88	0.96	0.96		
近	海	鉸	鯨	網		70.9	101.9	86.2	35.8	1.2	16.6	34.1	△ 1.5	14.6	30.5	1.6	15.6	44.0	1.8	21.1	1.17	0.78	1.06		
港	水	器				70.2	74.2	71.8	93.5	61.9	69.1	90.3	57.2	65.5	30.8	28.0	29.8	140.3	102.4	99.6	3.03	2.21	2.32		

資料：水協中央會，「漁業經營調查報告」，1979～1981。

少 또는 減少傾向을 보이고 있어 不良하다.

다섯째, 沿近海漁業經營體의 總資本이 1年동안 몇번 回轉했는가를 나타내는 總資本回轉率은 保合勢 내지 극히 完만한 增加勢를 보이고 있으나 絕對値는 平均 1.5回 정도로서 저조한 상태에 있다〈表 5〉.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沿近海漁業의 收益性은 매년 減少하고 있는데, 이러한 漁業收益性의 減少는 資本蓄積을 制限함으로써 沿近海漁業의 擴大再生産을 어렵게 한다.

바. 漁業經營收支의 惡化

앞에서 沿近海漁業의 資本構成, 生産性, 收益性 指標를 통하여 經營實態를 부분적으로 살펴 보았는데, 漁業經營收支狀況은 漁業經營의 成果를 종합적으로 나타낸다.

1978~80年の 우리나라 沿近海漁業 經營收支의 變化를 보면 〈表 6〉과 같은데, 表에 의하면 沿岸漁業의 경우 78年 漁業收入을 100으로 할

〈表 6〉 沿近海漁業 經營收支의 年度別 變化

單位：千圓

區分 年 度 漁業部門別	漁 業 收 入			漁 業 支 出		
	1978	79	80	78	79	80
沿 岸 漁 業 *	6,081	7,024	9,377	4,391	5,152	7,244
平 均	(100.0)	(115.5)	(154.2)	(100.0)	(117.3)	(165.0)
定 置 網 漁 業	33,173	39,394	39,750	17,628	22,524	33,454
平 均	(100.0)	(118.8)	(119.8)	(100.0)	(127.8)	(189.8)
水産廳長許可	43,768	48,148	72,903	35,546	42,263	61,437
漁 業 平 均	(100.0)	(110.0)	(166.6)	(100.0)	(118.9)	(172.8)

* 이 때 沿岸漁業이란 道知事許可漁業을 말함.

資料：水協中央会, 「漁業經營調查報告」, 1979~1981.

때 80 年の 漁業收入은 154.2 로서 78 年 ~ 80 年の 期間동안 54 % 가 増加했으나 漁業支出은 同期間 65 % 가 増加하여 漁業支出의 増加率이 漁業收入의 増加率을 훨씬 앞질러 沿岸漁業의 經營收支는 惡化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定置網漁業이나 水産廳長 許可漁業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對 策

지금까지 沿近海漁業의 經營實態 및 問題點을 살펴 보았는데, 앞에서 提起된 몇 가지의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諸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 零細漁業 經營體의 統合, 轉業對策 樹立

沿近海漁業經營體가 零細性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漁業收益의 増大가 先行되어야 한다. 그러나 沿近海漁業經營者들의 資本零細性, 沿岸漁場의 縮小, 漁業資源의 減少 등으로 自力에 의한 規模의 擴大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현재 零細한 規模를 가지고 있는 多數의 經營體를 統合하든가 轉業對策을 마련하여 轉業을 시키든가 하여 經營規模를 擴大해야 할 것이다.

나. 既存 淺海養殖漁場에 대한 事業性 再評價

淺海養殖漁場의 縮小에 대한 對策으로서, 干拓 등의 事業을 실시하기 이전에 既存 淺海養殖漁場에 대한 충분한 事業性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既存 漁場에 어느 정도의 基盤만 造成해 주면, 干拓으로 인한 것보다 有利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養殖漁場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資源造成事業, 水質汚染 및 濫獲에 대한 對策 樹立

漁業生産性 減少에 대한 對策으로서 먼저 資源造成事業을 들 수 있

다. 지금까지 資源造成事業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實績이 별로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政府에서는 1982~86년의 5個年間 總 298 億원을 投入하여 資源造成事業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本事業은 대단히 중요한 事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資源造成 技術水準으로 보아 그 成果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따라서 金후 本事業을 추진함에 있어서 技術의 開發에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水質汚染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專門知識을 가진 우수한 人力과 우수 機資材의 確保가 先行되어야 하며 아울러 汚染物質 排出業體에 대해서는 강력히 團束하여 적발업체에 대하여는 엄중한 制裁를 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濫獲으로 인한 資源의 減少를 막기 위해서는 不正漁業의 강력한 團束과 함께 現行 漁業許可制度 및 水產資源保護令 등을 再檢討하여 資源의 動態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라. 營漁資金의 擴大供給 및 融資條件의 改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沿近海漁業의 資本構成狀態가 不健全하다는 것은 資金이 不足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資金의 不足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최근에 들어 國內外의인 諸影響으로 漁業經營收支가 악화됨에 따라 營漁資金의 需要가 크게 增加하고 있는데 반해 資金의 供給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狀況에 비추어 營漁資金의 供給을 점차 늘려 나가되 融資節次를 점진적으로 改善하고 현재 15%~16.5%의 水準에 있는 水產資金의 金利도 引下하여 資金壓迫을 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 價格支持事業 및 備蓄事業의 擴大와 漁業經費 節減對策 樹立

漁業經營收支의 好轉을 위해서는 營漁資金의 供給擴大와 함께 현재 實施中인 價格支持事業 및 備蓄事業의 物量을 擴大하고, 漁業經費를 節減하기 위한 諸對策一例를 들면 免稅油類의 免稅幅 擴大, 漁業資材의 廉價供給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水協運動의 成果와 展望

安 重 基^{*}

1. 序 論

漁民의 唯一한 協同組織體인 水産業協同組合은 지난 1962年 4月 1日 發足하여 지난 19年間 그 組織 및 事業規模의 擴大 成長과 함께 世界 속의 協同組合으로 발돋움하면서 머지않아 成年水協으로서의 새로운 章을 펼칠 轉換期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時點에서 經濟的 弱者인 漁民의 權益保護와 所得增大를 目標로 하는 水協運動의 成果를 分析, 評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새 時代에 副應하는 水協運動의 展開方向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協同組合運動은 資本主義 社會가 가져온 階層分化 속에서 經濟的, 社會的 弱者들이 스스로 相扶相助의 經濟手段을 通하여 自立意志를 키워보자는 自願集團(voluntary group) 運動인 것이다.

우리 나라의 水協運動은 從來 各 漁村에서 數百年間 世襲의으로 내려온 「契」組織에서 發展될 수 있었으나, 日帝 侵略으로 抑制되었고, 直接的인 近因으로서는 農協運動의 成熟과 더불어 誘發됨과 동시에 日帝下의 非民主的인 統制機構로서의 漁業組合을 近代의인 漁民組織으로 不可避하게 代置시켜 漁村經濟의 指導的 役割을 擔當할 수 있는 有效한 組織運動으로 生成되었다.

그러나 水協이 發足할 當時, 우리 漁民들은 大體로 協同組合에 대한 認識이 不足했고 또한 이 運動을 展開하는 데 있어서 推進力이 微弱했던 탓

* 水協中央會 教育弘報部次長.

으로 協同組合을 自意的으로 일찍 組織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政府가 이를 代身해서 지난 1962年 農漁村의 革新的인 開發을 目標로 한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推進과 함께 農漁村開發政策의 推進體로서 水協組織을 設立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水協運動은 日帝의 搾取와 6.25 戰亂을 빚으로 짊어지고 未分化의 社會 속에서 시작되는 下向式協同組合運動이었으므로 漁村經濟의 一翼을 担當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러한 어려운 與件 속에서 시작된 水協運動은 60年代의 開發期와 70年代의 跳躍期를 거쳐 이제 成年의 安定期를 맞고 있다.

이제 앞으로 펼쳐나갈 새로운 次元의 水協運動을 展望해 봄에 있어서는 全社會圈(socio - sphere)의 運動과 關聯하여 그 脈絡을 理解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即, 水協運動을 包含한 우리 나라 經濟 및 社會運動의 方向은 이 經濟와 社會體系를 包含한 全社會圈의 運動法則을 理解하지 않고서는 水協運動의 展開方向을 바르게 認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60年代 初期에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推進하면서부터 近代化의 社會變動을 시작하였다. 近代化를 指向하는 社會變動의 一般的 段階說은 다음과 같이 一致하고 있음이 通說로 된다. 그 첫째 段階는 近代化를 指向하는 社會變動의 必要性을 느낀 指導勢力의 指導力 確立 段階이며, 둘째 段階가 社會, 經濟的 變化의 段階이고, 셋째 段階가 社會 統合, 即 福祉社會의 段階로 認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 나라의 社會變動상은 지난 20年間の 社會經濟的 變化의 段階를 거쳐 80年代 福祉社會 建設을 標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福祉社會가 指向하고 있는 것은 人間의 基本的 慾求를 充足시켜 줄 수 있고, 貧困, 住宅, 保健 教育, 勞動, 環境保全, 犯罪予防 등 實로 廣範圍한 領域에 까지 이른다. 特히 福祉政策 思想의 背景이 資本主義 社會의 構造的 矛盾 속에서 弱者 保護의 配分的 正義 쪽에서 考慮되고 있음을 볼 때, 이것은 協同組合運動의 弱者保護機能과 相通함을 보게 된다. 따라서 協同組合運動의 機能은 窮極의으로 福祉社會階層構圖를 想定하고 있음이 分明하다.

이렇게 볼 때 水協運動이 漁民組合員들에게 어떻게 하면 階層上昇移動이 可能하도록 도와주느냐 하는 것이 큰 課題로 登場된다.

水協運動의 主體인 漁民組合員들이 水協이라는 自願集團을 통해 自己歸屬感을 느끼면서 社會統合段階의 近代化 運動에 同參하는 것이 바로 水協運動의 課題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水協運動의 戰略은 바로 이 目標에 相應하는 具體的 手段의 提供으로부터 整理해 볼 必要가 있다.

2. 水協의 變遷過程

우리 나라의 近代의인 水產團體의 歷史는 1908年 7月 10日 舊韓國政府의 農商工部 大臣의 認可를 얻어 設立된 巨濟閑山加助漁基組合과 巨濟閑山毛舊田組合을 發端으로하여 韓日合邦 以後에는 日帝下의 1929年 朝鮮漁業令과 朝鮮漁業組合規則에 依하여 地域 中心으로 組織된 漁業組合과 特殊業種을 中心으로 組織된 水產組合 그리고 朝鮮水產會令에 依해 日本人 中心으로 組織된 朝鮮水產會가 3大 系流를 이루었다.

그 중 가장 活氣를 띤 漁業組合은 1930年 5월에 設立된 初期부터 道別 漁業組合聯合會가 組織되기 시작했고, 1937년에는 中央機關인 朝鮮漁業組合中央會가 設立되었다.

그 後 水產團體는 組織亂立의 弊害를 是正하기 위한 對策으로 朝鮮水產業會를 中央機關으로 設立하여 漁業組合을 會員으로 하는 道聯合會와 水產組合을 構成員으로 하였으며 朝鮮水產會는 解體되었다.

이러한 體系는 8.15解放 以後에도 繼續되어 왔으며 政府樹立 이듬해인 1949年 1월에 韓國水產業會로 名稱의 變更을 보았을 뿐, 水產團體組織의 變動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그 當時의 水產團體는 組織上으로 日帝時代의 殘滓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8.15解放 以後의 南北分斷과 6.25動亂으로 因한 各種 産業施設의 破壞로 因하여 完全히 機能을 喪失한 채 많은 問題點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의 改善策으로 1954 年에 韓國水産業會를 大韓水產中央會로 改編하여 機能回復을 試圖하기도 하였으며 그 後 政府와 業界 一角에서 水産業의 早速한 再建을 推進하기 爲해서는 水產團體의 改編이 必要하다는 論議가 抬頭되어 1955 年 商工部 水產局에서 起草하여 法制處에 回附된 後 그동안 遲延되어 오던 水産業協同組合法이 1962 年 1 月 20 日 法律 第 1013 號로 制定, 公布되었고, 同年 3 月에 同法 施行令이 公布됨에 따라 舊水產團體의 解散과 더불어 그 해 4 月 1 日 歷史的인 水産業協同組合의 出帆을 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政府의 第 1 次 經濟開發 5 個年 計劃의 시작과 함께 發足을 본 水協은 水產開發事業의 推進主體로서 創立當時에는 自體的인 事業基盤의 構築과 함께 그늘진 漁村社會의 開發과 漁業生産構造의 改善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데 注力하였다.

水協이 發足할 當時의 組織은 86 個의 地區別組合, 11 個의 業種別組合 2 個의 製造業組合 등 모두 99 個의 會員組合과 中央會로 構成되어 있었으며 그 當時 漁村에 散在해 있던 各種 「契」組織을 水協의 系統組織으로 吸收하여 漁村契로 組織했고 이 漁村契를 水協運動의 前哨基地로 삼는 同時에 經濟事業 中心으로 運營되는 水協을 代身하여 共同漁業權 管理機能을 擔當케 함으로써 沿岸漁業生産의 共同化를 꾀하였다.

初創期の 水協은 委販場의 設置, 各種 水產資金의 取扱, 油類直配事業의 開始 등 事業基盤의 確立過程을 거쳐 1967 年부터 各種 水産業開發事業의 積極的인 推進과 圓滑한 事業機能을 發揮하기 위하여 新規事業開發과 各種 事業의 擴大를 推進하기 시작했다.

60 年代末에 이르러서는 創立當時부터 注力해 왔던 漁業開發事業이 軌道에 올라서게 되자 協同組合으로서의 自體機能增進을 위한 活動과 制度 改善에 全力을 기울였다.

即 水協事業의 圓滑한 運營과 水協의 自律性을 높이기 위해 水產金融機關으로서의 體制를 完備하고 1 百億圓 自體資金造成運動을 展開했고 그동안의 運營過程에서 나타난 制度的인 矛盾을 是正하여 能率的인 奉仕體制를 마련하고자 水協法 및 附屬法令의 改正과 組織整備作業을 推進했다.

그리하여 1972년에 이루어진 組合整備作業은 發足當時 99個 組合에서 126個로 늘어난 會員組合을 行政區域 또는 經濟圈 中心으로 88個 組合으로 統廢합을 斷行함으로써 60年代 開發期の 水協組織改編作業이 一段 落된 것이다.

70年代에 들어선 水協은 跳躍期를 맞아 世界的인 資源波動的의 克服과 漁村새마을運動의 推進 등 多様な 綜合事業을 展開함으로써 成熟한 水協의 新面貌를 보여주었다.

특히 水協은 70年初에 政府가 推進한 새마을運動이 所得增大, 環境改善, 精神啓發 등을 目標로 하고 있어, 이는 바로 水協運動과 同質性을 갖고 있음에 着眼하여 그 當時 1,500個의 漁村契 組織力과 漁村契員의 協同을 바탕으로 하여 漁村새마을運動을 效率의으로 推進했다.

그 結果 漁村새마을運動을 통한 漁民所得增大와 漁村環境改善事業을 成功的으로 이끌어 基礎組織인 漁村契의 育成發展과 함께 水協運動의 成熟期를 맞게 되는 契機가 되었다.

한편 1973年末부터 몰아닥친 世界的인 油類波動으로 水産業部門에 致命的인 打擊을 加하게 되자 水協은 運營目標을 水産業開發에서 漁業經營安定을 위한 活動으로 轉換시켜 營漁資金과 各種 漁業生産資材의 圓滑한 供給과 生産漁民의 魚價安定 및 所得增大를 위한 水産物價格支持 事業 및 貿易事業 등을 開始하는 한편, 全國 主要消費都市에 內陸地共販場을 設置하는 등 多角的인 事業活動을 꾸준히 展開하여 石油波動的의 危機를 無事히 克服해 나갔다.

그 後 1979年 下半期부터 시작된 第2次 石油波動에 依한 世界的인 景氣沈滯의 餘波로 우리 나라의 經濟가 全般的으로 不況期를 맞았고, 이에 따라 水産物 輸出不振과 함께 魚價上昇率이 鈍化되어 漁家交易條件이 크게 惡化되는 등 水協의 活動與件도 매우 어려운 處地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渦中에서 80年代를 맞게된 水協은 새로운 石油危機가 漁民들에게 미치는 不利한 影響을 最少限으로 줄이기 위한 漁業經營活動에 全事業機能을 總動員하는 한편, 新時代를 맞기 위한 準備段階로서 任職員의 肅正과 함께 組織整備를 斷行하여 現在 中央會(8個 道支部 包含)와 71

個의 會員組合, 1,440 個의 漁村契(46 個의 法人漁村契 包含)로 對漁民奉仕體制를 構築했다.

한편 水協은 지난 1979 年 3 月 1 日 英國런던에서 開催된 ICA(國際協同組合聯盟) 執行委員會에서 滿場一致로 正會員에 加入되면서 世界各國의 協同組合과의 活潑한 交流가 시작되었고, 1980 年 10 月 모스크바에서 열린 ICA總會를 비롯한 ICA 各種 會議에 積極的으로 參與함으로써 國際인 地位向上과 水協運動의 國際化를 圖謀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安定期에 들어선 水協은 國內外的인 事業活動을 積極的으로 어나가면서 現在 各 事業部門에 對한 運營制度改善方案과 第2次 長期發展計劃을 樹立하는 등 自律協同經營體制의 確立에 注力하여 水協運動이 指向하는 福祉漁村建設에 總力을 傾注해 나가고 있다.

3. 水協事業實績의 評價

水協運動은 水協法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漁民의 協同組織을 통한 生産力 增強으로 漁民所得増大와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꾀하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水協은 이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 ①教育訓練, 調查研究, 經營管理業務 등을 擔當하는 指導事業을 비롯하여, ②生産資材의 共同購買 및 利用加工 業務를 擔當하는 生産支援事業, ③共同販賣, 軍納, 貿易, 價格支持事業 등을 擔當하는 流通支援事業, ④與·受信 및 內·外國換業務, 借款轉貸業務를 擔當하는 金融支援事業, ⑤共濟, 漁業通信, 漁撈指導業務를 擔當하는 操業安全支援事業 등을 遂行하고 있다.

그러나 水協의 이러한 事業들이 確定되어 뿌리를 내리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과 陳痛을 겪어야만 했다.

60 年代 開發期에는 港口都市의 客主勢力에 依해 漁民은 完全히 從屬되고 있었다하여도 過言이 아니었다.

漁民이 必要로 하는 生産資材의 供給과 生産物의 委託販賣를 비롯하여 生産資金의 供給 등이 大部分 이들 客主勢力에 依해 이루어졌다.

客主勢力은 漁民들에게 一見 모든 便宜를 提供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實相은 每段階마다 漁民으로부터 高利의 搾取를 일삼아 왔던 것이다.

이러한 客主勢力의 搾取로부터 零細한 漁民들을 救濟하기 위하여 水協運動의 必要性을 啓蒙하는데서 水協의 첫 事業이 시작되었다.

우선 當面課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生産基盤의 造成을 爲한 充分한 資金供給機能이 必要했고, 나아가서는 水産物의 多段階 流通構造過程에 介入하고 있는 商人勢力을 排除하기 위한 流通段階의 縮小改善이 要求되었던 것이다.

이 必要性을 充足시켜 주기 위한 信用事業의 機能이 要求되었고 沿岸委販場과 內陸地 共販場施設 등이 要求되었다.

이와 같은 商人勢力의 不當搾取의 認識으로부터 시작된 開發期의 事業을 着實히 遂行한 다음, 70年代 跳躍期에는 漁業經營安定을 위한 綜合事業을 活潑히 展開하는 한편, 特히 漁村새마을運動과 水協運動을 一體化하여 漁村革命을 成就시켜 나가는 動機를 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70年代에는 現在 取扱하고 있는 多様な 業務機能을 遂行함으로써 單純한 商人勢力의 支配로부터 解放되는 것이 問題가 아니라, 水協은 社會變動 속의 漁村社會 主體로서 開發者(developer)의 資格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따라서 水協은 漁村이 近代化 指向의 社會變動 속에서 逆進의 要素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同參者의 資格으로 成長과 福祉達成의 一翼을 担當하는 機能을 遂行하는 쪽으로 運動의 軌道를 修正했다고 보겠다.

여기서 水協이 그동안 遂行해 온 主要事業部門別 實績을 照鑑해 보면서 80年代 展望의 指針을 삼기로 한다.

첫째로 信用事業部門을 보면 水協의 信用事業은 漁民組合員들의 營漁資金을 비롯한 中長期開發資金 등 生産基盤造成資金과 經濟事業의 圓滑한 遂行을 돕기 위한 資金供給이 目的이 되며 이 資金의 圓滑한 調達을 위한 自體資金造成業務를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1962년부터 1969년까지 資金供給 總額과 調達總額은 185 億원에 達하고 있으며, 이 規模의 資金을 가지고는 水産金融部分의 總所要資

金을 充當하기에는 너무나 微弱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었다.

그 理由는 이 돈의 窓口가 相對的으로 脆弱했기 때문에 分析되고 있는데 그 內容을 보면 調達源의 大部分이 政府貸下金(107 億圓)으로 充當되고 其他 微微한 出資金(1 億圓)과 預受金(23 億圓), 共濟基金(7 億圓)과 農協借入金(30 億圓), 借款(17 億圓)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시말하면 貸出金의 大部分이 財政資金이고 組合金融은 너무나 貧弱했었다.

이러한 事情은 水協運動의 下向式組織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으나 한편 漁民組合員의 參與意識이 低下되어 있었던 것도 한 原因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資金調達能力의 脆弱性을 벗어나기 위하여 指導業務를 強化하는 한편 組合員增資運動과 1百億 自體資金造成運動의 展開, 與受信業務의 擴充을 위한 信用店舖의 增設, 金融借入金의 擴大 등을 期하여 水産資金의 確保에 안간힘을 다 하였다.

그리하여 1981年度 水産資金의 總規模는 4,599 億圓에 達하여 지난 1971年度에 比해 約 13 倍의 伸張勢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資金調達面에서 韓銀借入金, 借款, 財政資金 등의 借入金이 38%, 其他 13%를 차지하고 있고, 自體資金은 49%에 그치고 있어 그 構造面에서 脆弱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最近 市中銀行의 民營化와 自律化 및 新設銀行 등의 國際化 趨勢는 水協金融 가운데 商業金融部分을 크게 萎縮시킬 素因으로 登場하고 있어 一般顧客을 相對로 한 預受金의 吸收障礙로 資金調達能力이 크게 制限될 것이 憂慮되고 있다. 따라서 이로 因한 不足分の 補充은 不可避하게 財政資金으로 支援되어야 할 것이 要請된다.

金融市場의 民營化나지 自律化의 意味는 重化學工業部門의 投資財源造成에 있다고 보아질 때 이것은 單純히 金融市場에서의 威脅이 될 뿐만 아니라 一般 市場經濟의 民間企業 大型化로 因한 水協運動의 機能弱化도 間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보아지므로 政府는 福祉國家가 最弱補完이라는 側面에서도 財政資金의 擴大支援은 當分間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고 생각된다.

둘째, 經濟事業部門을 보면, 發足 當時 水協의 經濟事業은 漁民들의 生産資材의 購買과 水産物의 沿岸委販場을 통한 委販業務 程度로 滿足할 수 밖에 없었다.

1965 年부터 漁業經營費의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油類를 直配하는 事業이 시작되어 1972 年부터는 漁業用油類에 대한 免稅措置가 이루어져 購買事業實績은 急増하였다. 또 1966 年부터는 漁船裝備改良事業이 推進되어 魚群探知機, 로랑, 方向探知機 등이 購買供給되기 시작했고 70 年代 들어와서는 組合連鎖店과 漁村契購買場이 增設되면서 漁民들에게 良質의 船需品과 生活必需品를 廉價로 供給하는 事業이 活潑히 展開되었다.

특히 刮目할 만한 것은 沿岸水産物委販場의 數가 1962 年 發足 當時에 16 個 所이던 것이 1981 年 現在는 155 個所로 늘어났고 內陸地共販場도 1965 年度에 1 個所이던 것이 1981 年 現在는 9 個所로 크게 擴充되었다. 따라서 水協系統販賣率도 1962 年度에 54.2 %이던 것이 1981 年 現在는 82 %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中間商人의 不當搾取가 점차 排除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또한 一時多獲性水産物의 價格保障을 위한 緩衝在庫量 確保와 水産物價格支持事業도 지난 1975 年부터 시작하여 每年 큰 實績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밖에 軍納事業과 1976 年에 시작된 貿易事業이 크게 伸張勢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經濟事業部門의 伸張勢를 보면 지난 1970 年에 비해 1980 年末의 油類供給實績은 15 倍, 水産物委販고는 3 倍, 貿易事業은 무려 49 倍의 伸張率을 나타내고 있다.

세째, 共濟事業部門을 보면 水協의 共濟事業은 漁民들의 生産터전인 海上災害의 危險과 貧困의 救濟商品으로 더없이 緊要한 事業이 아닐 수 없다.

특히 水協共濟는 民間利潤追求保險과는 달리 社會保險의 特性을 가지고 있어 零細漁民의 災難復舊와 貧困救濟에 크게 寄與해 왔다.

初期의 水協共濟는 漁船共濟와 船員共濟 등 그 種類가 單純했으나 70

年代에 들어오면서 厚生共濟, 子女共濟, 施設共濟가 開發되었고, 現在는 教育共濟, 貯蓄共濟, 福祉共濟 등이 새로이 開發되었다.

그리하여 共濟契約고는 1970 年度에 194 億원이던 것이 1980 年末에는 2,604 億원에 達하여 무려 13 倍의 伸張勢를 보이고 있다. 또한 共濟事業에서 얻은 利益金은 共濟基金으로 編入하여 共濟獎學金과 落島僻地漁村巡廻 病院船運營 등 漁民에게 보다 많은 還元事業을 펼치기도 했다.

以上에서 몇 가지 主要事業의 骨子만을 紹介하였는 바 이와 같은 事業의 綜合效果는 漁家所得面에서 評價되어 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漁家所得은 지난 1972 年末의 年間戶當 所得이 28 萬 4 千원이던 것이 1979 年末에는 192 萬 3 千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아직도 農家所得(222 萬 8 千원) 이나 都市勤勞者 所得에 (263 萬원) 의 比해 가장 뒤떨어지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한 理由는 水協運動自體內的 補完을 要求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反面 水産業 自體의 制約性과 그동안 推進되어 온 우리 나라 經濟政策의 脈絡에서도 理解된다.

지난 20 餘年間 工業化優先政策과 都市의 集中開發은 漁村人口의 離漁 現狀을 招來하여 漁村의 生産從事者數를 크게 減少시켜 놓았다. 지난 1962 年末에 109 萬 4 千名이던 漁民은 1979 年末 現在 79 萬 1 千名으로 減少하여 總人口對比 約 3% 水準으로서 지난 1960 年度の 4.1% 보다 1% 程度 減少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工業化로 因한 産業構造의 高度化水準을 말해주고 있어, 한편 近代化社會의 不可避한 事情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漁村勞動力의 高齡化로 因한 生産性 減少要因으로 作用하고 있음이 問題다. 이러한 脆弱性을 補完하는 方法으로는 生産道具의 現代化 내지는 生産技術의 科學化로 勞動力 減少를 代替하는 길이다.

이와 같은 漁業人口의 減少趨勢에도 不拘하고 漁業總生産, 漁船勢力 및 水産物輸出 등에서 계속 伸張勢를 보이고 있음은 多幸이지만, 만일 生産 指標의 絶對值까지 減少한다면 水産業部門은 他産業部門의 成長值까지를 減少시켜 주는 要因으로 作用함으로써 逆進的인 要素로 남을 것이며, 이럴 境遇 水協의 事業活動 역시 크게 萎縮시켜 놓을 것이 予想된다.

4. 成長經濟와 水協의 役割

水協發足當時의 우리나라 水産業은 漁業基本施設 및 生産手段의 脆弱性, 技術의 後進性 등으로 水産經濟는 全般的으로 落後性을 免치 못하였다.

그러나 4次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成功的인 推進에 힘입어 水産業은 生産과 輸出面에서 刮目할 만한 成長을 거듭하여 生産은 世界 8位, 輸出은 世界 6位の 上位圈水産國으로 飛躍의인 發展을 이룩했다.

이러한 水産業의 發展을 이룩해 온데는 政府의 積極的인 開發施策이 奏效했음은 말할 必要도 없지만 여기에는 漁村契 中心의 새 마을所得増大事業을 効率的으로 推進하고 全體 水産資金의 調達 配分과 全國的인 水産物 共販機能의 強化로 漁業増産과 漁民所得 増大를 促進시킬 수 있었던 水協의 役割과 그 業績이 看過되어서는 안된다.

水協으로서는 國家經濟의 立場에서 水産業部分이 成長의 逆進要素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成長과 安定의 두 指標上에 寄與하기 위해서도 自體的인 機能을 總動員하여 全力投球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는,

첫째로 漁民들의 生産活動을 充分히 도울 수 있는 自體資金의 擴大供給이 이루어져야 한다.

自體資金造成問題는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市中銀行의 民營化와 自律化 및 國際化 趨勢와 깊은 關聯을 갖는다고 본다.

現在 水協의 自體資金造成部分은 一般預金과 組合金融(相互金融) 및 出資金, 共濟基金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 一般預金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앞으로 預受金市場의 制約要因이 登場하고 있어 水協으로서는 自體資金造成에 隘路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預金이 어렵게 되는 條件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水協으로서는 受信店舖를 擴充하고 相互金融 店舖를 더 늘리는 쪽으로 推進해 나가야 하며 水協이 國庫取扱을 할 수 있도록 制度化 하고 市郡 및 教育金庫를 水協에 積極 誘致하는 등 資金調達機能을 한층 強化해야 한다. 또한 外國 換業務도 現在 乙類에서 甲類取扱으로 擴大開發함으로써 有關業體를 誘致

하여 輸出金融과 一般金融을 連繫支援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하며 與信業務에서도 漁民便益爲主로 融資手續節次를 더욱 簡素化하고 信用貸出의 幅을 점차 擴大하는 方向으로 그 制度를 改善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協同組合에 있어서의 自體資金의 基本은 組合員의 出資金과 相互金融 쪽에 있으므로 이것은 一線組合이 水協運動의 一環으로 이를 自律的으로 擴大推進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

둘째로 아직까지 未實現段階에 있는 水產物流通構造를 大幅 改善하여 生産者와 消費者를 同時에 保護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水產物의 流通問題는 政策的 次元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關心을 갖고 그 改善方案을 研究해 오고 있으나, 水產物流通의 特性인 一時多獲性으로 인한 需給調節의 限界와 腐敗變質性으로 인한 價格形成의 時限 때문에 쉽사리 그 解決策을 求하기 어려운 實情이다.

이 問題의 解決을 위해서는 流通業務機能을 政府와 水協이 나누어 가지고 政府는 行政支援과 資金支援을 맡고 水協은 流通現業을 專擔하는 方向에서 流通構造를 改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協同組合 本然의 機能과 設立 目的에 비추어 漁民은 生産에만 專念하고 販賣는 水協이 專擔할 수 있도록 水協은 系統出荷體系를 組織化하고 內陸地 共販場運營을 活性化하여 現在 5~6 段階의 流通段階를 3~4 段階로 縮小해 나가야 할 것이며, 水協의 價格調節機能이 20% 以上 될 수 있도록 漁民이 生産한 水產物을 盛漁期에 收買備蓄²⁾ 漁閑期에 放出販賣하는 水產物價格支持 및 安定事業을 계속 擴大推進하고 아울러 保管施設을 大幅 擴充해야 할 것이다.

세째로 生産基盤을 擴充하여 漁業生産量을 持續的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漁民의 生産基盤이 되고 있는 漁場의 保護는 必須的 課題이다.

그런데 近來 우리나라에서도 工業化와 더불어 臨海工團의 設置로 淸淨 漁場에 工場廢水가 흘러들어 赤潮 등에 의한 漁場被害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實情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漁民들에게는 災害補償對策이 制度化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돈은 陸上의 工場에서 벌고 그 被害는 漁民이 負擔한다는 것은 크게 矛盾된 일이며 마지막 남은 人間의 生産터전인 바다를 工業化의 被害로 망쳐버린다면 그 問題는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自然力에 依한 農業災害補償에 相應한 被害補償은 물론이요, 工場廢水에 依한 漁場汚染의 被害補償을 制度化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漁場의 保護없이 濫獲하여 水産資源을 枯渴시키는 不正漁業을 徹底히 根絶시켜야 하며 沿岸資源造成을 위한 魚礁施設의 擴張과 各種 水産物 養殖業의 劃期的인 發展도 계속 獎勵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添記하고 싶은 것은 生産手段을 갖지 않은 漁民에게도 協業生産을 할 수 있는 生産手段의 供與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即 組合所有의 漁船을 生産手段이 없는 漁民組合員들의 協業을 爲해 貸與하는 制度의 創設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네째 共濟事業의 擴大推進으로 名實相符한 福祉漁村을 이룩해야 한다.

水協共濟는 그 性格上으로보아 社會保險의 性格을 갖는다. 零細한 漁民은 自己가 갖고 있는 共濟目的物을 共濟에 加入시키고 싶어도 共濟料 負擔이 어려워 共濟에 加入치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 水協의 共濟料가 他民間保險에 比해 破格的으로 低廉한 것은 事實이지만 앞으로 80年代를 두고 생각할 때 共濟料의 破格的인 低廉만으로 安住하고 있을 수 없다. 水協共濟가 社會保險의 性格을 갖는 것에 異議가 없다면 共濟加入은 義務의이어야 하며 義務의 強制가 따른다면 現在의 船員共濟와 마찬가지로 共濟料의 一部 負擔은 當然히 國庫補助가 바람직한 것이다.

漁船, 船員, 火災, 教育, 貯蓄, 福祉共濟는 지금까지 組合共濟, 即 相互共濟로부터 그 幅을 넓혀 社會政策的 側面에서 考慮해 볼 때가 되었다. 災難과 貧困의 追放이 共濟事業의 目的이라면 그것은 福祉國家의 目標와 完全一致하고 있는 것이다. 民間保險은 保險加入希望者가 保險會社를 찾아가지만, 水協共濟의 性格은 水協이 共濟目的物을 찾아 漁民 쪽으로 가는 逆選擇(adverse selection)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漁民이 負擔할 共濟料의 一部는 國家가 補助하고, 더러는 完全히 國家補助가 되어야 한다.

또한 해마다 늘어가는 養殖場被害를 補償해 줄 수 있는 養殖共濟도 再

檢討할 必要가 있다. 물론 養殖共濟는 이웃 日本의 例에 비추어 技術上 많은 어려움이 있고 莫大한 資金이 所要되므로 당장 實現하기엔 어려움이 있겠으나 漁民들에겐 時急한 當面問題로 登場하고 있다는 點에서 國庫補助 등에 依한 制度化가 切實히 要請된다.

이와 같은 共濟事業의 擴大改善으로 受惠對象인 漁民의 共濟加入이 實現되었을 때만이 名實相符한 漁村의 福祉化가 可能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自體組織整備과 任職員의 經營管理能力 培養으로 對漁民奉仕機能을 한층 強化해야 한다.

水協의 組織目的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組織整備가 先行되어야 한다. 水協中央會 산하의 會員組合間에는 아직도 均衡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組織基盤을 再整備하여 모든 組合이 完全自立經營이 可能하도록 經營指導를 強化해야 한다.

또한 教育을 통해 水協任職員의 經營管理能力을 培養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中央會와 會員組合間에 段階別 人事交流가 實施되어 나가야 한다.

뿐만아니라 地區別組合의 傘下漁村契를 80 年代에는 自立・自營・福祉의 三形態로 分類하여 所得直結의 새마을事業을 그 地域實情에 맞도록 더욱 알차게 推進함으로써 福祉漁村建設에 拍車를 加해야 한다.

이와 併行하여 現在 水協에서 示範의으로 實施하고 있는 協同研究班 (study circle) 編成教育을 全系統組織에 擴大實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協同研究班 編成은 全系統組織에서 10 ~ 15 名 程度로 同質性을 갖는 그룹을 編成하고 月 2 回 以上 主要當面問題 또는 協同組合運動에 대한 隔意없는 討議와 研究를 하게 함으로써 系統組織의 活性化를 期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이러한 教育方法을 成功的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水協運動은 下向式 組織運動에서 協同組合 本然의 上向式 組織運動으로 轉換되는 새로운 契機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方法이 採擇되어지는 理由는 漁民組合員들이 組合에 대한 歸屬感을 느끼게 하여 水協運動에 自律的으로 參與하는

動機를 賦與하자는 意圖에서이다. 共同討議, 研究가 自己問題의 解決에 이르게 하고 組合과 關聯된 問題를 直接 組合에 建議, 要求함으로써, 組合運營의 投入機能을 擴大하여 組合運營의 硬直性和 非民主性を 改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80年代 水協運動의 展開方向

이제 水協은 漁民과 呼吸을 같이 하면서 온갖 逆境을 헤치고 곳곳이 자라는 生命력을 바탕으로 하여 새時代의 出帆과 함께 展開되는 福祉漁村建設의 主役으로서 80年代를 安定期로 만들기 위한 문턱에 서 있다.

漁民組合員과 水協과의 關係는 물과 고기의 關係로 比較할 수 있으므로 漁民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水協은 存立의 意味를 잃게 되며 福祉漁村建設의 目標도 한낱 꿈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水協이 漁民組合員의 生活속에 뿌리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人的團體로서의 水協固有의 特徵이 暗示하고 있는바와 같이 먼저 組合員과 任職員相互間, 組合員과 組合員 相互間, 그리고 任職員과 任職員과의 縱橫의 相互連帶意識이 定着되고 이를 위한 共同象徵으로서의 共同目標定立이 1次的인 課題가 된다.

水協運動의 中心體는 말할 것도 없이 漁民과 直接 協同運動을 展開하고 있는 一線組合이다. 따라서 漁民의 漁業經營과 家計活動의 日常窓口로서의 組合은 그 生命이 上向式 自律經營體制를 갖추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總會, 理事會 등 議決機構의 機能活性化가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漁民의 意思를 最大限 收歛하여 이것이 事業에 反映하도록 하는 民主的 運營方式이 早速히 導入되어야 한다. 同時에 民主方式에 依한 共同意思가 事業으로 連結되어 多數漁民組合員의 利益을 通해 組合의 存在를 實感케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이것이 바로 水協運動의 目標을 實踐하는 첫 段階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實利慾의 充足은 組合利用率의 增加를 誘發시키는 上昇作用을 하여 事業의 擴大를 가져오고 收支改善을 通해 經營餘力이 發生되면 還元能力의 擴充이 이루어지는 一聯의 經營成長의 效果를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從來의 肉體的 奉仕概念은 利益을 되돌려 주는 可視的, 實利的 奉仕概念으로 補強되어야 하며 이러한 터전 위에서만이 水協運動이 漁村에 定着될 수 있고 眞正한 漁民의 組合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水協運動의 中心體인 組合의 健全한 育成을 圖謀하기 위해서는 中央會의 現業務機能을 점차 줄여서 會員組合에 大幅 移管시켜야 한다. 또한 漁村契는 새마을事業의 主流가 되는 所得増大事業의 推進體로서, 보다 效率的인 改編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協同研究班의 活動을 통해 그 組織機能이 活性化되고 強化되어야 한다.

그러나 漁民의 立場에서도 自己組合에 대한 適切한 義務履行과 이에 對應하는 알맞는 權利行使가 큰 意味를 갖는다는 것을 留意해야 할 必要가 있다.

왜냐하면 漁民 스스로가 主體性있게 組合運營에 參與하지 않는 限, 水協運動의 將來는 官僚的 이미지를 떨쳐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80年代의 水協은 漁民과 組合과 中央會가 組織面에서 同一線上에 놓이게 되고 運營面에 있어서는 相互補完의 關係가 定立되어 國民經濟의 均衡, 成長에 一翼을 擔當한다는 窮極의 目標을 뚜렷이 세우고 一絲不亂한 體制로 協同團結하여 우리의 至上目標인 福祉漁村建設을 앞당겨 이룩해야 할 것이다.

6. 結 論

80年代의 國家的 目標은 福祉와 社會正義의 具現에 있다.

水協運動역시 國家目標과 발을 맞춰 漁村社會를 福祉社會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福祉社會는 무엇보다도 蓄積된 餘力이 必要하다. 이 餘力이 모든 사람의 機會를 均等히 해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水協은 이 餘力을 어디서 얻는가? 무엇보다도 自律的 協同組合運動속에서 經營을 改善하고 여기서 얻어진 餘力이 組合員을 위한 還元事業의 形式으로, 또는 各種 支援事業으로 나타날 것이다.

水協은 漁村福祉社會로 이끌어 나갈 推進母體이다. 그러므로 漁民組合員

은 水協에 歸屬感을 갖고 水協이 自己目的達成을 위한 有用한 自願集團임을 認識해야 한다.

組合員과 組合간의 同一性 (Identity) 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水協이 漁民들의 利益을 그때그때 表出, 取合하여 漁民들의 利益成就에 不斷히 努力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機能의 確保는 組合運營의 自律性에서 찾아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組合員들의 自發的 經營參與와 組合의 經營改善이 可能하리라고 期待되며, 漁村福祉化가 스스로의 힘에 의해 成就되어져야 된다고 自覺하는 動機를 賦與할 수 있는 것이다.

討 議 內 容

一 般 討 議

司 會 (韓重健, 韓國水産振興會長) : 오늘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이 우리나라 沿近海漁業의 發展方向에 관한 政策協議會를 主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네 분의 主題發表者께서 沿近海漁業의 資源, 經營狀況, 政策問題와 水協活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에 대한 質疑나 補充發言이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朴九秉 (釜山水大 教授) : 振興院의 朴科長님 발표하신 重要魚種 動態를 보니까 대부분이 下級魚類에 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總量的으로 어느 정도 漁獲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所得水準의 向上에 따라 中級魚의 需要가 커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어리, 고등어, 멸치, 이런 魚類만 많이 漁獲하는 것이 상책이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李朝 末부터 日帝時代까지를 보면 당시 여기에 오르지 않는 高級魚種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李朝末에 日本 사람들이 漁獲하러 왔을 때 주로 도미를 잡았는데, 그 당시 縛網으로 한 그물떠서 도미를 3만마리 잡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70~8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조기라는 것도 鮫鰈網이 찢어져서 못 잡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 나라 沿近海漁場의 資源相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高級魚는 濫獲으로 줄고 下級魚는 늘어났고 볼 때 이것은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資源造成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과거처럼 總量的 生産量을 올리는 조성에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적 조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資料에 보다시피 함돔

넙치 같은 중요한 資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展望과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朴炳夏(水産振興院 沿近海資源調査科長) : 발표시간의 制約 때문에 主要魚種을 취급하는 데 있어 多獲性 魚種을 취급대상으로 하였습니다. 振興院 자료에는 상기 魚種외에 지금 말씀하신 참돔이라든지 민어 등이 있습니다만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대책을 볼 것 같으면 結論에서도 약간 언급했지만 高級魚種의 減少問題가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研究는 그런 高級魚種과 동시에 전체적인 水面에서의 潜在力 문제도 종합연구 개발할 予定으로 있습니다.

潘性統(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委員) : 水産專門家は 아닙니다만, 朴科長님 발표하신 걸 보면 대부분의 魚種이 漁獲努力量을 증가함에 따라 漁獲量이 떨어지는 데 經濟理論上 어느 정도의 漁獲努力量에서 最高의 生産을 올릴 수 있는냐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를 많이 잡으면, 새끼를 칠 수 있는 분량이 적어지니까, 總漁獲量이 漁獲努力에 反比例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農業과 조금 차이가 나는 데, 農業은 投入을 많이 하면 生産可能性이 증가되는 데, 漁業은 公共財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증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沿近海漁獲量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漁業資源을 어느정도 擴大하고 어느 정도를 최대한으로 하여 잡을 것인가 하는 것과 결부된다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漁船隻數나 屯數가 어느 정도라면 最高의 漁獲量을 올릴 수 있고, 우리가 최대로 잡을 수 있는 漁獲量이 어느 정도이다라는 것을 정해 제도적으로 統制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둘째로는 日帝時代 때 대구 등은 許可制로 운용되었는데, 요즘은 그대로 방치해 실제 잡는 수가 크게 적어지고 있으며, 機船底引網 등이 沿岸魚種을 멸종시키는 상황이므로 이도 漁獲量增大를 위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投資와 관련된 것으로서 動力化한다는 것도 總體的 漁獲高를 높이고, 漁家所得을 증대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면 좋으나, 무리한 動力

化는 사실상 逆效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漁家所得 問題인 데 漁家の 構成은 大企業的 漁家와 零細한 漁家로 분리되어 있는데 巾着網, 底引網 등은 상당히 대기업적이고 5톤 급 어선들은 매우 영세하므로 이에 대해서 상이한 政策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朴九秉 : 漁家所得이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이것이 全漁業者를 통틀어 취급한 것인지, 순수한 의미의 沿岸零細漁家만 취급한 것이지요?

朱尤一 (韓國農村經濟研究院 水産開發研究室長) : 漁家所得에 대해서는 제가 農水産部 統計擔當官室에서 나온 漁家口 소득관계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朴九秉 : 이것은 평균적 의미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農家は 계층 사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漁家は 계층이 너무 많아서 海女와 스텐트를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平均概念으로 따져서 얼마인지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며 실제로 沿岸 零細 漁家の 소득은 農家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상으로 비교해 놓은 것은 零細漁民을 인위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해 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숫자가 영세어민의 빈곤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水産業 내부의 계층간의 차를 분석하지 않고는 이것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司 會 : 振興院의 朴科長님 발표하신 것은 주로 多獲性 魚種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인 데 저도 朴九秉教授님과 같이 高級魚種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朴教授님께서서는 도미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미와 같은 底棲魚種 보다는 回歸性 魚種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東海岸에서 양식한 연어, 송어가 3~4년 후 회유해서 돌아오는 率이 3

% 정도인 데 이는 日本의 回歸率 1.3%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日本은 各國의 200海里 經濟水域에 대한 對策으로 北海道를 비롯하여 혼슈우 북쪽에다 연어, 송어를 대대적으로 부화시켜 1990년까지 투자하면, 經濟水域 宣布로 인해 잃은 外海의 漁獲量의 8할 정도를 沿近海 資源인 연어, 송어로 메꾸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현 스즈끼首相이 農林大臣으로 있을 때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연어, 송어資源을 도미나 기타 자원보다도 더 잘 增殖시킬 수 있고 回歸率도 3%로 日本보다 좋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연구해야 되리라 봅니다. 지금 水產振興院의 院長님도 와 계시니까, 이에 대해 口頭로라도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義秀(水產振興院長) : 오늘이 11월 3일이니까 어제 날짜로 內水面 研究所가 振興院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內水面을 진흥시킨다고 해서 몇 년전에 淸平養魚場 등이 水產廳 直轄로 갔다가 어제 날짜로 振興院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연어에 대한 연구관계는 振興院에서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九秉 : 연어의 李朝初期 分布를 보니까 咸鏡道는 말할 것도 없고, 慶尙道, 江原道 등 연어, 송어가 나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우리가 많이 연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의 資源 分布狀態로 보아서 가능성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許亨澤(海洋研究所長 職務代理) :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연어資源은 水質汚染 때문에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어는 영어로 trout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에는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얼마전 우리 나라에서 導入은 했음니다만 아직 商業化할 단계는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振興院에서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니다.

金均炫(水産廳 生産局長): 연어, 송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水産廳에서 추진해 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어는 과거에 우리 東海岸에 많이 회유해 왔고, 또 이것이 상당량 漁獲되었습니다. 그후에 濫獲, 바다汚染 등으로 해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0여년 전에 이 資源을 復活시키기 위해서 韓·美合同으로 우리 나라 연안의 연어분포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개발계획 수립, 그리고 孵化場에 대한 설계서도 美國 諮問官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된 것이 江原道 五十川의 道立孵化場, 慶北 연어孵化場, 密陽의 慶南道立孵化場 등인데 과거 10년 이상 추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시설을 갖춰 놓고 親魚를 확보하지 못해 미국의 親魚를 연간 100萬尾 이상 계속 5년동안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keta種이 아니고 coho라는 미국種 연어로서 이것을 세 孵化場에서 해마다 100萬尾 이상을 방류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魚種은 3~4년 후에는 돌아와야 하는 데 회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魚種에 대한 輸入은 일단 중지했습니다. 다만 과거 우리 나라 연안에 왔던 「케타」種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資源管理를 하여 최근에는 상당한 회복세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回歸週期를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재작년에 돌아온 것이 약 1,000尾, 작년에는 약 1,200尾 정도로 차츰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許선생께서 송어는 우리 나라에 있는 지, 없는 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것도 연어와 같이 가져와 江原道에서 전문적으로 養殖을 하고 있습니다. 이 養殖場은 완전 기업화되어 서울 일류 호텔과 契約하여 매일 일정량을 供給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연어와 송어에 대해 국가적으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으나 우선 資源이 부족하기에 오는 쪽쪽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朱室長 말씀하신 것 중에 水産政策의 目標을 食糧増産, 雇傭效果, 外貨獲得으로 했는데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만, 水産政策의 첫째 목표는 역시 漁民의 所得増大가 가장 중요하리 라고 봅니다.

다음 朴九秉教授께서 漁家所得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는 대규모의 遠洋漁業, 沿近海漁業이 제외되고, 家口當으로 경영하는 漁業을 상하층으로 평균해서 산출한 純漁家所得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成斗(朝鮮日報 論說委員) : 水産專門家도 아닙니다만 여러 專門家들께서 하신 말씀중에 몇가지 의문되는 점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먼저 朱室長 발표중에 水産物 自給率 문제가 나오는 데, 저는 이 문제가 나올 때 마다 疑問을 느낍니다. 水産物 自給率이 137%라고 하면 잡은 고기를 먹고 남는 것을 遠洋漁業 같은 데서 輸出할 때 그것이 137%라는 이야기인 데 그럼 과연 自給率이란 무엇에 대한 自給率이나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國內消費에 대한 自給率이라고 하면 國內消費가 어느 水準에 있는 것인가, 國內消費가 지나치게 抑制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만약 消費가 急增하고, 生産만으로 自給 못 한다 할 것 같으면 自給率이 그 만큼 부족하다는 말이 되겠는데, 지금 消費増大를 위한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水産廳의 金局長께서 우리 나라 水産業의 政策目標가 食糧増産, 雇傭效果, 外貨獲得 등은 둘째 문제이고 漁民들의 所得増大가 水産政策의 일차적인 과제이고 목적인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만 저는 이것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漁民所得이라 하면 消費가 상당히 늘고, 需給상태가 그런대로 안정상태에 있을 때, 所得増大라는 게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漁民들의 所得増大를 위해 水産業 이전에 우리 나라의 食糧문제, 雇傭문제, 外貨사정 등을 감안한 水産政策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漁民所得向上과 직결되지 않겠는가하고, 저는 보고 있고, 특히 食糧問題와의 연결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動物性 蛋白質의 소비체제가 急增一路에 있습니다. 을 한해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動物性 蛋白質을 공급하기 위해서 적어도 2천만섬 이상의 外穀을 導入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나라의 食糧不足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어마어마 합니다. 올해 貿易收支赤字가 대충 45억

달라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飼料用 食糧導入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수지 문제에서 飼料用 食糧供給이라는 것이 아주 큰 壓迫으로, 우리 나라 外債의 急増을 促進하는 형편입니다. 현재의 外債規模로 볼 때 利子만 45억 달러를 갚아야 하는데, 이것은 國防費보다 더 큰 것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外債를 累積시키고 金利負擔을 안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국제수지를 어떻게든 개선해야 하는데 지금의 政策方向은 飼料用 穀物食糧을 공급하여 動物性 蛋白質을 생산하자는 것이므로 이렇게 가다가는 國際收支가 절대로 改善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쇠고기 등의 動物性 蛋白質에 대체할 수 있는 食糧으로서의 水産物을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 나라의 현실적인 國際收支 상황을 보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水産業에 대한 의미를 再評價하고 그런 방향에서 문제의식을 세워 접근한다면 水産業發展方向이라는 것도 달리 세워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에 漁村後繼者 문제에 대해서는 政府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資金支援 같은 것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만 後繼者를 육성함으로써 漁業人口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漁業이 잘 되고 그런대로 제 위치를 유지하고 國民經濟의인 비중을 유지해 나갈 때, 漁業人口가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지금같이 漁業所得이 형편없는 데 몇 사람 잡아 놓는다고 해서 뭐 되겠습니까? 솔직히 政府支援이라는 것도 얼마 안됩니다. 지금과 같은 漁業所得을 전제로 할 때, 그래도 漁村에 머물러 있겠다 하는 사람은 不合理한, 經濟的으로 별 價値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똑똑한 사람은 진작에 漁村을 떠나야죠. 뭔가 收益性이 맞아야 漁村에 남아 있는 것이 당연한 논리인데 이 당연한 논리를 넘어서서 漁村에 머물러 있겠다 하는 사람은 합리적인 정신을 못 가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문제의 접근을 뒤바꾸어 다른 각도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周鴻章(國際水產開發研究院長): 발표하시는 분들이 좋은 대책 같은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우리 水産業을 지금 한계에 와 있는 것과 아직 한계에 오지 않은 것 2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한계에 와 있는 것은 水産資源이 한계에 와 있고 漁船勢力이 한계에 와 있습니다. 流通構造에는 다소 더 개선할 여지가 있지만 이 流通構造도 사실상 한계에 와 있습니다. 水協의 委販事業에 내맡긴다 할 경우도 3, 4 段階밖에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은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한계에 안와 있느냐 하면 인위적 水産資源의 造成이 한계에 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營漁資金의 현실화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1,200 억원 혹은 얼마다 하는 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沿近海部門에 적어도 2,500 억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50%도 안 됩니다. 그러나 숫자상으로는 60%다, 70%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所要資金의 현실화를 빨리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稅制運用問題입니다. 현 稅制는 漁業이 잘 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놓고, 漁業이 안될 때도, 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어업이 될 때와 안될 때를 구분해 매년 彈力稅를 적용해야 우리 漁業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지 一般産業과 같은 稅制運營의 카테고리 속에서는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아까 張教授께서 經營문제에 대해서 발표하셨는데, 사실 명목상만 黑字가 난 것이지 실제로는 모두 赤字입니다. 日本의 경우만 하더라도 中小企業 이하를 대상으로 발표된 것을 보면 遠洋底引網 300톤~500톤급, 연어, 송어刺網 100톤급, 揚繰網 50톤급, 이 세가지 외에는 작년에 黑字난 漁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營漁資金 문제에다가 稅制問題에 대한 特別支援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特別法이 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漁業制度整備特別法 같은 것을 제정해서 지원해야지 現行法 테두리 내에서는 政府나 水協이나 백방 노력해 보지만 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냉철하게 어떠한 부분에서 漁民들이 政府의 혜택을 받았느냐를 따져

볼 때, 매년 營漁資金 조금 올라가는 것 외에는 별 혜택 본 것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水協이 그동안 漁業基盤造成事業, 協同問題, 資金調達問題 등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음니다만 80 년대에 와서 한가지 중요한 과제는 지금 정부에서 力點을 두고 있는 資源造成과 관련된 不正漁業을 協同運動으로 없애야 합니다.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資源造成 아무리 해 봐야 우리 沿岸海漁業은 망하고 말 것 입니다. 그러니까 不正漁業 제거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均炫 : 金成斗委員께서 제 얘기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水産廳이 蛋白質 供給源과 食糧産業으로서의 水産業에 대한 政策目標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 水産物은 附加價值도 높기에 外貨獲得에도 기여도가 큼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漁民들이 잘 살기 위한 것이므로 所得増大에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鄭炳璇 (第一製糖 食品研究所 顧問) : 일반적으로 食品이라고 하면 주요 5大 營養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水産物의 경우는 動物性 蛋白質과 不飽和 脂肪酸의 供給源이라는 두가지 側面에서 食品으로서의 위치가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 1979년 1인1일당 蛋白質 攝取量은 73.8g인데 그 중 水産物이 차지하는 量은 18.8g, 畜産物은 7.8g, 나머지는 植物性 蛋白質입니다. 그런데 73.8g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적어도 30%는 動物性 蛋白質이어야 하는 데 지금 그 量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싼 動物性 蛋白質은 역시 水産物이고 특히 정어리 같은 것은 작년도 가격이 69원, 재작년도 가격이 67원으로, 작년 274원, 재작년 115원인 고등어와 비교해 보면 4분의 1 정도의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營養學의으로도 畜産物에 비해 손색이 없으며, 특히 不飽和 脂肪酸이라는 점에서 그 기름은 畜産物에서 오는 高血壓, 肥

大症 등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줍니다. 그러나 정어리는 가격이 싸기에 鮮度가 나쁘고 利用度도 食用으로 보다는 거의가 飼料로 쓰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飼料로서 닭에게 준다면 단백질 效率에 있어 직접 먹는 것과 3 배의 차가 생깁니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직접 먹어야 되겠는데, 잡는 데서부터 流通, 加工까지 전체가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잡으면 魚價가 안내려가도록 加工方法도 잘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일본만 보더라도 금년에 정어리가 11 만톤이나 통조림되어서 약 80 %는 輸出되고 20 %는 國內消費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통조림업체와 업자들이 契約을 하여 약 1,000 톤 정도밖에 통조림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食糧이라는 차원으로 볼 때 쌀 등은 二重穀價制로 해서 농가를 도와주고 있는데 단백질면에서 쌀보다 3 배의 가치가 있는 水産物은 二重魚價制로 할 수 없는 것인지, 혹은 稅制, 造船 등에서 보조의 폭을 늘릴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을 가져 봅니다. 東洋에서는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 收入이 적을 때 생선을 먹다가 收入이 늘어감에 따라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저는 쇠고기를 輸入하는 것보다는 국민 전체의 營養水準이 올라갈 때까지는 水産物에 역점을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며 또 하나는 수산업계에서 수산물을 잡는 것과 加工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잘 안맞아 가지고 귀중한 生鮮을 내버린다든지 혹은 價値를 떨어뜨려 가공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 資源면에서 보면 日本에서는 150 만톤 ~ 160 만톤의 정어리를 잡고 있고 우리도 5 만톤 잡고 있습니다만, 日本에서 저렇게 漁獲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資源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하겠고, 둘째는 水産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官, 水協, 學界가 잘 협력하여 전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研究도 大學과 振興院이 연결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教育制度도 전체적으로 시스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遠洋漁業은 經費의 약 30 %가 기름값인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沿近海漁業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大學이나 研究所에서 일치 단결하여 연구해서 그 결과를 教育, 指導함으로써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李鍾禮(現代海洋理事長): 먼저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韓國農村經濟研究院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水産雜誌를 펴내고 있기 때문에 평소 느낀점이 많읍니다만 오늘 토의되어 가는 내용을 보면 거의가 우리들이 평소에 느끼고 생각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有形의 資産을 떠나서 정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05년쯤인가 토인비 교수가 그 당시 일본 明治維新시대에 동양에서 한 나라가 세계로 발돋움하고 있다 하는 歷史觀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世界大戰을 일으켜서 세계를 넘나볼 수 있을 정도로 日本은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바탕은 원고 하면 투철한 職業觀이었읍니다. 말하자면 공무원만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도 애국하고 어떠한 職責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 애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바탕이 明治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水産界에 있습니다만 船長이 돈을 조금 벌면 육상에 올라와서 술집이나 다방을 차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 産業社會가 발전될 수 없습니다. 船長은 어디까지나 세계에서 제일 가는 船長으로서의 자기 職業觀이 확립될 때 한국사회의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水産에서 돈벌어가지고 陸上에 投資해 버리면 水産業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우리 水産界에서 水産人들이 생각하고 느껴야 할 점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평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水産人 또는 漁民하면 상당히 零細하며 못사니까 돈 좀 빨리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인것 같습니다. 모든 施策이 원리원칙을 떠난, 기적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産業經濟의 基本構造는 生産構造와 流通構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의 水産政策은 전부 生産政策이었고 流通政策은 소외되어 왔읍니다. 張교수님 발표하신 것 보면 아시겠지만 生産面에서는 자꾸 過大支出되는데 왜 收入面에서는 비례되지 못합니까? 이래가지고는 빈곤의

악순환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流通政策面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流通問題를 들고 나왔느냐 하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水産業이 庶子취급을 면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政府의 研究機關을 보면 KAIST 附設 海洋研究所에는 經濟分析室이 있고 農村振興廳에도 經濟分析室이 있는데 水産振興院에는 經濟分析室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제순환 기본은 資本을 投下하여 상품생산을 해서 다시 資本으로 환원합니다. 즉 100 원을 投資했을 때 110 원이 나와야 비로소 擴大再生産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張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이 바로 우리 沿近海漁業 전부를 웅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부 縮少再生産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해결점을 찾았으면 하고 바라며, 또 아까 朱室長님 내용에서 보면 漁業改善문제하면 流通問題도 터치되어야 하는데 漁業生産構造만 언급되었습니다. 이 점 제가 지적하고 싶고, 水協中央會 安次長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현재의 水協運動과 80 년대의 永協運動 展開方案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協同組合運動은 개인운동, 단일운동이 아닌 공동운동입니다. 그리고 水協法 第 65 條에도 모든 사업이 공동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販賣事業만이 오늘날까지 委託事業입니까? 委託이라는 것은 자기 물건을 남한테 즉 客主에게 팔아달라고 할 때 委託입니다. 적어도 어민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려고 하면 공동판매운동을 전개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80 년대 水協의 販賣事業도 공동판매사업으로 전개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용어상의 문제입니다만 자기가 자기물건을 파는 것은 直接販賣, 直販이죠. 그런데 協同組合에서 委託販賣라는 용어를 사용하니 조금 이상한 감이 있습니다. 協同組合에서 委託販賣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곳은 水協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梁泰奎(近海鮫鰈網水協組合長): 제가 近海鮫鰈網漁業에 몸담고 있는 관계로 漁場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 월까지는 西海에서 오징어를 잡다가 4 ~ 8 월에는 갈 漁場이 없어 배를 매달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1978 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78 년 水産廳告示로서 규제했던 韓國漁船出漁自主規制區域線이 日・中共漁業協定線 以東 30 마일이던 것이 '79 년에는 20 마일을 더 확장한 50 마일로 해 놓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專管水域 12 마일의 3~4 배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물론 안보적 차원에서 걱정이 되어 규제를 하는 것이겠지만 近海漁船들이 이 때문에 漁場을 잃고 고기를 잡지 못해 생기는 적자는 鮫鰈網의 경우 대략 58 억원 정도로 보고 있고, 여기다 旋網, 大型機船底引網, 流刺網, 상어延繩 등을 합하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업자들을 선량한 어민으로 보시고 가능한한 빨리 국가의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지사가 없는 한 50 마일線を 좀 완화하여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日本과 中共은 國交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中共과 國交가 없으므로 제 3 국을 통한다든지 민간외교의 길을 모색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沿近海業者들이 적자를 다소나마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卓今守(釜垂下式養殖水協組合長) : 저는 淺海養殖問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올해 沿岸에 있는 灣이나 隣近漁場에는 赤潮 등이 발생해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淺海養殖業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農藥에 의한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물론 工場廢水나 生活廢棄物에 의한 피해도 많습시다만 가장 심한 것이 역시 農藥의 피해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한 해에 한 道에서 수천톤 내지 수만톤의 農藥이 살포되고 있다는데, 물론 行政方向이 主食문제 해결로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動物性蛋白質의 供給源인 바다가 오염된다고 할 때 좀 고려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선에 있는 행정관들과도 대화를 해 보지만, 사실 일선에 있는 市長, 郡守들이 農業쪽에만 중점을 두어 행정을 펴려 하지 어업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 전문가들의 좋은 말씀이 이 자리에서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 안 된다면 연구과제로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년전부터 행정방향이 잡는 漁業에서 기르는 漁業으로 전환되어 그동안 養殖漁業이 상당히 발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의욕적인 行政때문에 養殖業者들이 過剩投資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업자들이 자신의 限界領域만 지키고 경작하면 될텐데 여기에 不正漁業이 개입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상호간 漁業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방이후 여태까지 사실상 어민들이 遵法精神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의 습성이 자기위주로, 내일은 생각않고 우선 현재 눈앞에 닥친 일에만 만족하려는 양상을 띄고 있어 양식있는 사람들의 염려를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璋熙(韓國水產新報社會長):제가 평소에 느낀 점 몇가지만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水產에 대한 認識問題인데, 행정당국이나 입법기관, 일반국민들이 水產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않고서는 水産業을 復興, 發展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水產政策을 펴나가야 할 것인가를 法, 制度的 측면에서 日本과 비교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日本이 水產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水產物生産, 需給의 安定化, 水産業所得의 提高에 주안점을 두기 시작한 것은 1961년 沿岸漁業構造改善對策을 세우면서부터였고, 이는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2차계획이 1978년에 끝났고 3차계획이 1979~1985년까지인데 이 내용을 보면 日貨로 國庫 약 2,000억, 融資 약 3,120억, 도합 5,120억圓을 투입해 沿岸漁業構造改善事業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1971년에 海洋水產資源開發促進法을 만들었고, 1974년에는 沿岸漁場整備開發法을 만들어 2가지 제도를 법으로서 확립했는데, 이것은 政府 즉 農林水產省이 주동이 되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閣議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법은 주로 漁場造成事業에 관한 것으로서 그 중 제일 큰 것이 魚礁設置事業이라 하겠고, 그 다음이 增養殖 관계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県단위로 増養殖에 관한 기본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1976년부터 내년까지 약 2,000억圓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것과 병행해서 꼭 살아 남아야 할 중요한 漁業에 대해서는 漁業債權 中止特別法을 1976년에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 정어업으로는 현재 8가지 정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사업은 1976년부터 시작하여 1차계획은 1980년에 끝났고, 2차는 1981년부터 1985년 까지 막대한 資金을 들여 모든 시설의 近代化, 統數의 조정, 기타 生産의 效率을 높이고, 經營合理化를 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政府에서 좋은 시책을 많이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政府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므로 범국민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沿近海漁業을 중심으로한 全體水産業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 미비되어 있는 法, 制度를 대폭 補強하고, 새로운 法, 制度를 만들기 위한 調査研究委員會 같은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水産界 各계各층의 의견을 망라하여 衆智를 모으고, 또 이에 대한 충분한 研究, 檢討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바다의 汚染이나 濫獲 등 漁業秩序의 문란을 정비하기 위하여 假稱 海洋守護委員會같은 것을 만들어 바다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柳晟奎(釜山水産大學教授): 淺海養殖의 문제점, 그리고 그 改善 등에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淺海養殖에 관련된 문제로서 크게 다섯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우리나라 淺海養殖의 特性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980년의 養殖高는 54만톤입니다. 이것을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貝類가 28만톤, 海藻類가 26만톤, 나머지 魚類, 기타가 124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개 이 養殖高面에서 보면 해수중에 발생하는 먹이라든지 해수중에 녹아 있는 營養鹽類 등을 이용해서 양식하는 貝類나 海藻類의 養殖高가 전체의

99.9%입니다. 飼料을 주어서 養殖하는 養殖高는 아주 보잘 것 없어서 대개 100톤 안팎입니다. 이 이유는 養殖水域이 高緯度地方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고 또 飼料가 대단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國內養殖은 飼料가 필요하지 않는 貝類나 海藻類를 연구대상으로서 앞으로 취급해 나가야 되리라 봅니다. 이와 아울러 과잉생산되는 몇 種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계획생산할 수 있게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飼料가 필요한 종류의 養殖입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으나만 사실 우리나라는 위치적으로 高緯度地方, 차가운 地方에 있기 때문에 성장이 잘 안되고, 또 飼料가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飼料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養殖은 외국의 알맞은 곳으로 진출해서 養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養殖技術問題입니다. 養殖技術을 2가지로 나누어 보면 ① 種苗生産에 대한 技術問題인데 種苗生産 技術중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人工種苗 生産技術 問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人工種苗 生産을 하고 있는 종류는 전복을 위시한 7종입니다. 여기서 연간 약 465만尾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 다시마는 합쳐서 10萬미터 생산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天然種苗 生産技術 問題입니다. 사실 이것은 資源量이 많으면서 附着性이거나 一時附着性인 특수한 종류중 극히 한정된 종류만을 개발했을 뿐입니다. 非附着性인 대부분의 종류, 附着性이라 할지라도 피조개 등과 같이 실제로 養殖開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수한 몇 종에 대해서는 전연 技術開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種苗生産技術을 개발하는데 과감한 投資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② 養成技術 問題입니다. 1976년의 養殖場의 면적은 47千ha이고 여기서 41萬톤을 생산했습니다. 1980년의 養殖場면적은 78千ha이고 여기서 54萬톤의 養殖高를 올렸습니다. 사실 이 4년간에 새로운 養殖場이 엄청나게 많이 면허처분되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內陸性養殖場이고, 外海性養殖場은 가리비의 백몇십ha 뿐으로 극히 적은 면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養殖歷史上 볼 것 같으면 大量廢死 등의 문제점이 생겼던 곳은 모두 內

灣性養殖場이었습니다. 內灣性養殖場은 면허처분된 것만 하여도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外海性養殖場을 개발하는데 특히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나오는 魚礁問題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養殖秩序 問題입니다. 天然採苗場은 해에 따라, 場所에 따라, 時期에 따라 그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採苗場은 免許處分으로 일정한 수역에다 고정시켜 두고 있습니다. 또 免許處分한 採苗場에다 시설을 하지 않으면 단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속실적은 현재로선 전연 없습니다. 따라서 天然採苗事業 등은 申告나 기타 적절한 是正조치가 없다면 不正, 無秩序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補償問題에 대해서는 여러번 지적되었지만 養殖業에서 養殖共濟라든지 補償制度가 조속히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4)養殖 生産力低下 問題입니다. 第5次 經濟社會開發計劃 기간중에 238 km²의 바다를 埋立할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埋立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따른 産業廢水, 都市廢水 등에 의해서 汚染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①汚染의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나라에는 현재까지 水產行政水質基準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빨리 설정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관계부처간에 汚染防止體制를 확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汚染源과 汚染實態의 공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으며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지 않으면 실효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②水產資源保全地區의 확대입니다. 이미 5개수역 1,396 km²를 지정했고 앞으로 7개수역 2,548 km²를 지정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같은 부분적인 지정보다는 앞으로 汚染이 우려되는 방대한 수역의 확대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沿岸養殖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③養成場의 造成입니다. 사실 人工魚礁事業은 政府에서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萬ha중 2,500 ha에 지나지 않는 좁은 면적(比率로는 3.1%)에 한하여 人工魚礁事業을 실시했

읍니다. 앞으로 이 事業의 확대실시가 필요하겠읍니다.

(5) 種苗 生産放流 問題입니다. 種苗生産施設은 과감한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種苗生産한 것을 放流하는 것만으로 그 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放流幼生의 관리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法制定도 생각해 볼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沈載亨(서울大學敎授) : 저는 海洋生態學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沿近海漁業의 발전을 궁극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生産性을 높여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익을 높이고 또 거기서 오는 이익이 국민전체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生産性에 대한 문제를 아마 다시 생각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먼저 그 生産性을 파악하는 기초가 얼마나 학문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外國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沿近海漁業이 활발히 되고 있는 곳이 구라파의 北海연근해어업입니다. 거기서는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基礎資料를 1960년대에 들어와서 총정리하여 그 해역 전반에 대한 어업의 전망을 밝혔읍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어업의 기본요소가 될 수 있는 변수 13개쯤을 통계처리해서 1970년대 초반에 소위 「모델 C」라는 것을 개발해서 長期漁業展望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資源이라는 문제에 대해 몇년도에 얼마의 수확을 올렸다는 얘기를 할 뿐이지 그것이 과연 얼마만한 전망을 가지고 잡을 수 있는 量인가, 혹은 우리해역의 生産能力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아직 논의 못하고 있습니다. 振興院에서는 60년동안의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6·25때 일부 단절된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충분히 연구해서 海洋生態系의 구성성분 상호관계를 파악하겠다는 데 대한 노력 또는 연구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라는 것이 企業과 달라서 돈을 投資했을 때 금방 회수가 안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 연구결과가 企業에 직결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投資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海洋環境이라는 것은 외국의 海洋에서 얻어진 결과를 여기에 응용하려해도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리는 같지만 海洋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三面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이 三面의 바다가 海洋學的으로 각각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沿岸海域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는 일부 되어 있지만 그 전체를 하나로 파악하고 그 전체에서 일어나는 생산문제를 취급해 본 우리의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돈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海洋環境 전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이해해 가지고 그러한 대단위 연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까 柳교수님께서 沿岸養殖業에 대해 말씀해 주셨읍니다만 우리가 바다에서 생산을 올릴 수 있는 길은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天然資源에서 거둬들이는 것과 環境을 활용하여 養殖해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에 대해서 그 潛在能力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이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주변 해역에 대한 大單位生態系에 대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沿近海漁業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金榮球 (海軍大學 教官): 저는 海洋國際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海洋國際法에 대한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海洋法協約이 준비기간까지 합해서 13년간을 협의해 가지고 내년 봄이면 실질적으로 토의를 끝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달전에 공식화된 草案이 나왔고 내년 봄에 그 초안에 대한 최종적인 修正 討議를 끝내서 내년 겨울이면 協約이 타결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활동 전체에 대한 成文法規가 이제 나온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中國과 오키나와列島로 해서 半閉鎖 되어 있고 東海道 日本의 혼슈우와 北海道로 해서 半閉鎖속에 들어있는 셈입니다. 日本과 中共이

지난 1978 년이래 國交正常化하여 通航量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日本이 中共石油에 의뢰하는 탱커의 通航量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로 인한 기름유출의 위험도 커 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지역에서는 大型油類事故가 없었습니다만 1969 년도와 1970 년도에 유럽에서는 아주 큰 大型流出事故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대량유출된 기름이 회석될 가능성은 다른 어느 해역보다 작습니다. 예를 들어 22 만톤의 탱커하나가 黑山島해협이나 濟州道해협 부근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나라가 10 년동안 벗어나기 어려우리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韓半島 근해에서의 海洋汚染規制문제로 제기해서 진지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캐나다와 같은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자기네 근해에 대해서 소위 國內基準主義로 해서 船舶의 構造, 승무원의 資質 등 여러가지 基準을 세워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國際法學者들이 캐나다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비난하는 예가 있습니다만 그대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도 국가의 자위책으로서 심각하게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아까 몇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調查研究委員會 또는 海洋守護委員會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제쳤는데 명칭은 어떻든 Stand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우리의 海洋問題를 연구해서 이것을 직접 政策決定者와 연결시킬 수 있는 기구가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朴九乘: 지금 여러가지 대책문제가 나왔는데 日本에서는 1960 년대 초에 漁業基本對策答申會가 만들어져, 政府가 요구하면 위원들이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식으로 하여 진지한 연구를 합니다. 政府는 그 漁業基本對策答申會가 제출한 방침에 따라서 수산정책을 추진해 나왔습니다. 우리도 日本의 漁業基本對策答申會와 같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도면, 생산면 등에서 엄밀히 조사케 하고 政府측과의 협의도 거쳐서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沿近海漁場에 대한 資源調査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資源調査를 바탕으로 해서 알맞은 노력을 투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over capacity, 과당경쟁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經費가 없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등의 애기만 하다가는 끝내 조사한번 제대로 못한 채 주먹구구식의 水産業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沿近海資源에 대한 정확한 調査, 거기에 알맞은 정확한 漁獲努力量の 投入, 이것 없이는 水産業의 振興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日本은 50년 전에 벌써 水産學全集이 나왔는데 우리는 아직 그것이 만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學生들이 책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水産學계통의 全集物이라든지 특수한 책을 출판할 때는 손해가 나지 않도록 文敎部에서 특수보조비를 지급해서 水産學의 知的 水準을 높여주자는 것을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강력히 주장합니다.

張設鎬(釜山水産大學 教授): 지금 우리 漁業은 養殖단계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水産開發, 海洋開發이라는 큰 범주속에서 기초조사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漁獲統計로서 자원관계를 운운하고 있는데 좀더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기 위해서는 직접 해양에 나가서 資源을 조사해서 漁獲統計와 資源調査를 종합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專管水域內에서의 沿近海漁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沿岸水域內의 어업에 대한 制度改善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沿岸漁業에서는 지금의 제도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不正漁業을 보더라도 現制度下에서 不正漁業의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水産廳과 행정관서에서 指導船이 나가고, 水協에서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만 水産廳의 取締는 사실 처벌권이 없습니다. 처벌권을 갖고 있는 경찰당국도 한 면에 1개정도의 支署를 두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다른

防犯문제도 있어서 어업문제에만 전념할 수 없고, 또 광범한 해역을 더더구나 커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水協에서 자체 활동으로서 告發센터를 全漁村契에 두고 있습니다만 告發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告發했다가는 그 漁民은 그 地域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全國漁民들의 공통된 애기입니다. 그리고 糊口策을 위해서 不正行爲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資源造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한 沿岸水域內에서는 차라리 網漁業을 완전히 폐지시키고 定置網漁業이라든가 延繩漁業과 같은, 다시 말하면 일정한 體長 이상의 목표물만 漁獲할 수 있는 漁法으로 개선하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沿岸漁場이라는 것이 產卵場이고 稚魚場입니다. 그래서 더욱 위와 같은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는 現行 許可漁業이나 養殖漁業의 漁業權件數가 많다는 것입니다. 水産業을 하나의 産業으로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수지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점에서 資源量이 중요시 되는데 許可件數, 免許件數를 조절하여 資源量의 고갈을 막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漁業權制度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漁業被害補償制度라든가 公害補償制度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漁村에 가보면 어민들의 얘기가 농업에 대해서는 自然被害補償을 해 주면서 어업은 왜 안해주느냐고 하더군요. 어민들은 漁具, 漁船 등을 土地와 같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우 土地는 가만히 있고 栽培物만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는 보상을 해 주고, 어민들의 漁具, 漁船 등의 流失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 준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自然被害에 대해서는 漁業補償制度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위적 피해도 있는데 工場廢水, 農藥으로 인한 汚染, 都市廢水 등으로 漁場生産性を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피해에 대해서 加害者가 확실한 것은 보상흥정을 하고, 그게 잘 안될 때는 소송까지 제기하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公害補償制度 등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司 會 : 대단히 감사합니다. 一般討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간 쉬었다가 다음 綜合討議시간에 보다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綜 合 討 議

司 會 (周鴻章, 國際水產開發研究院長) : 마지막 討議를 제가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먼저 발언을 하시지 않은 분의 발언을 끝내고, 政府側에서 資源문제와 施策관계에 대해 설명이 있고 난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이끌어 나갈까 생각합니다.

許亨澤 : 전시간에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별 할 말이 없습니다만 資源문제에 대해 잠깐만 보충할까 합니다. 沿近海漁業의 주체가 결국 資源입니다. 資源이 없으면 水産業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資源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전혀 서 있지 않습니다. 爲政當局 특히 經濟企劃院의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研究所에서 資源에 대한 調査를 하겠다 하면 절대로 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資源에 대한 과학적인 調査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調査가 곧 資源管理問題, 保護問題, 資源造成問題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振興院의 朴科長님께서 資源의 適正量이나 MSY 등을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가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漁獲統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문제되겠습니다. 當局에서 水產統計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지만, 실지 나가보면 水產廳에서 말하는 統計와 道水產課, 水協, 漁村契에서 말하는 統計가 다 다릅니다. 좀더 구체적인 調査를 할려고 할 때, 어느 것을 참고로 해야 할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基礎生産力調査로 부터 시작해서 資源量에 대한 파악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中共의 예를 보면 1958년 부터 1962년까지의 5년간에 渤海灣近海에서 南支那海까지 철저한 調査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海洋開發政策을 수립했고 이미 6개의 海洋研究所가 있습니다만 금년내로 4개의 研究所를 추가해서 10개로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껏 집중적인 科學的 資源調査를 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振興院에서 단편적으로는 했습니다만, 豫算부족 등 政策的인 支援不足으로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資源量 파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資源에 대한 生態 즉 回遊經路, 習性 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쥐치가 최근에 많이 나타났지만 이 資源이 더 많아 질지 아니면 내년에 자취를 감춰 버릴지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온 西海岸에서 실치가 잡히는 데, 실치의 成魚인 베도라치가 지금 상업적으로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으나, 鄭文基선생의 魚類圖鑑을 보면 베도라치가 威鏡道로 부터 전국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生態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것이 쥐치와 같은 중요한 魚種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까 水產廳 金局長님께서 연어의 放流事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국의 연어, 송어를 들여와 가지고 몇년 동안 放流事業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썼는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에야 안 사실이지만 「코호」 연어의 生態를 전혀 모르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美國 측에 잘못이 있지만, 「코호」 연어는 1년 6개월이 되어야 스몰트期에 들어가고 스몰트期에 이른 것만이 바다를 향해 回遊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냥 孵化해서 바로 放流했기 때문에 다른 고기의 밥이 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總合的인 資源量把握, 資源生態把握, 그 다음에 그것을 基礎로 한 資源管理, 漁場管理問題, 資源造成問題를 다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나 노력의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水產關係에서 여러가지 할 것이 많지만 資源調査 및 管理問題에 우선 政府가 과감한 投資를 해야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潘性統 : 전문가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참고삼아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資源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일정한 海域에서 하나도 안 잡았을 때 고기가 존재할 수 있는 능력과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 圖表를 보면 投入을 많이 하면 總體的 生産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水産政策的으로 政府에서 投資를 많이 하면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生産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政府投資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生産을 못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성립이 안됩니다.

둘째는 資源配分 문제인데, 최대로 漁獲할 수 있는 魚種에 대해서는 배를 늘리고 漁網供給을 늘려서 많이 잡도록 하고 資源枯渴로 인해 현실적으로 배를 줄여야 할 때는 배를 줄이는 것이 所得配分상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배를 줄이도록 해서 漁獲을 못하게 한다면 社會的인 불화, 政治的인 문제로 까지 비약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制度的으로 좋게 고쳐서 마찰없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가혹한 말 같습니다만 漁網會社를 통해서 漁網의 生産을 제한시킬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漁村契라는 것이 있으니까 漁村契協業事業을 하여 共同生産케 하여 共同分配할 것 같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濟州道の 전복養殖에서 그렇게 하여 문제가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잡도록 하니까 작은 것까지도 잡아서 점점 生産이 줄어드는데 漁村契를 통해서 일정한 사이즈를 잡게 하니까, 生産이 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魚種에 대해서도 이런 制度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九秉 : 최근에 와서는 網目制限, 體長制限을 輸出名目으로 풀어 놓으니까, 資源이 줄어들어 業者들이 도로 묶여 달라는 말이 나옵니다. 農業에서는 高米價政策을 쓰면 生産이 늘지만 漁業에서는 濫獲段階에서 高魚價政策을 쓰면 持續의 生産量이 도로 줄어든다는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高級魚가 일단 일정량 이하로 줄어들면 그 위치를 다른 고기, 下級魚가 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高級魚가 다시 회

복하여 돌아 올 가능성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高級魚選好的인 漁獲努力을 계속 강화시킨다면 우리나라 沿岸의 고기가 下級魚로 꺾차 버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資源造成問題에 있어서 選擇的 造成이 되어서 食生活패턴의 변화에 따라 갈 수 있는 資源의 造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귀중한 資源이 너무 濫獲된 경향이 있는데, 그런 魚種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漁獲禁止해 버릴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선 눈 앞에 몇톤의 실적을 올리느냐는 것, 당장 2~3년 동안에 얼마나 잡느냐 하는 데만 급급해 가지고 장기적인 保護對策을 등한시 해 왔고 그것이 오늘날 不正漁業도 제대로 단속못하는 결과가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張設鎬: MSY 말이 나왔습니다만 MSY도 우리가 실제 行政이나 事業에 어느정도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 지금까지 하나의 假說로서 내어 놓을 수 있는데 불과한 것이지 실제 이용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MSY 자체가 현재 漁獲統計를 중심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漁獲統計 자체가 부정확합니다. 또 MSY가 魚種別로 어느정도 정확히 추정되더라도 그것을 행정적으로 이용할 때는 구체적인 統數, 規模 등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사실상 요원합니다. 아까 제가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漁船톤수가 資源에 비해 과다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資源이 크게 減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MSY에 대한 補完調査도 필요하고 궁극적인 면에서 海岸線을 耕作化하기 위한 基礎生産力, 魚獲量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의 선택문제도 요원하다고 봅니다.

이런 단계까지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研究調査에 대한 投資를 증대하고 현실적으로 자연에 의탁해서 造成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資源은 沿岸 즉 淺海나 內灣에서 대개 產卵되고 稚魚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各漁業이 稚魚漁場에 집중되어 있어 資源管理상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稚魚들이 外海로 나가 成長한 후에 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당장의 生計問題와 직결되므로 漁民들은 稚魚漁場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網目制限이나 體

長制限으로는 통하지 않으며, 어떤 取締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안어민들이 어업으로 부터 이탈할 수 있는 轉業對策을 마련해 주고 이 지역에 그런 漁業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稚魚가 외해로 나가 성장한 후 선택적으로 포획한다면 자원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더라도 점차 조성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李鍾礼 : 資源問題에 대해 상당히 깊숙히 파고 들어 갔읍니다만 하나의 근본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1970, 1971 년도 당시 우리나라 GNP에서 水産業이 차지하는 비율이 1.2%이고 그 당시 水産部門豫算이 전체豫算의 1.2%로 거의 같은 수준에 있었는데 1978 년도에 와서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로 성장하였으나 豫算面에서는 0.6%로 내려갔읍니다. 海洋依存의 시대가 왔다면 水産豫算은 $1.8\% + \alpha$ 가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0.6%로 내려갔읍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무일도 못합니다. 流通問題에서도 농업에는 이중곡가제 등 모든 혜택을 주는데 水産業은 같은 食糧産業인데도 왜 이렇게 푸대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國家的인 관점에서 水産業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읍니다. 사실 우리에게 는 民族漁業資本이 없고 또 그것을 축적할 시간적 찬스도 없었읍니다. 왜냐하면 凶漁때도 울고, 豐漁때도 울어야 하는 것이 우리 沿近海漁業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農業에서 豐年饑饉이란 말이 있었읍니다만 우리에게도 豐漁饑饉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漁業資本의 축적을 위한 流通對策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보충발언 드렸읍니다.

李義秀 : 먼저 얘기된 것은 것은 資源問題였는데, 振興院에서의 資源評價는 農水産部에서 나온 水産統計도 물론 기초가 되고 生物學的 統計도 우리가 조사를 했고, 실제 漁場調査, 또 몇년 전부터 시작한 東西南海岸의 底棲生物調査, 또 10여년간에 걸친 韓・日兩國間的 資源전문가에 의한 資源分析 등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이용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나와 있는 資源評價도 앞으로의 資源管

릴을 하는데 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80 년대에는 주변해역에 200 海里가 설정되리라 보는 데 그렇게 되면 200 海里를 벗어난 어업들은 漁場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현재 運用하고 있는 韓・日漁業協定도 어떤 변혁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展望을 두고 볼 때 보다 구체적인 MSY를 내고 그에 적정한 漁獲努力量을 투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어업의 再編成이란 문제로 귀결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가 큰 研究課題로 다루어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資源問題에 있어 확실히 일부 資源이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또 일부 資源은 平衡내지 增加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현재 나와 있는 MSY에 의해 적정 漁獲努力量을 산정하여 이를 밀고 나가고, 동시에 5차 5개년 계획에 산정된 資源造成事業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養殖場 老化和 海水汚染문제인데 前者는 어업자체內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密殖문제와 不正漁業이 성행하는 한 이 문제의 解決은 어렵습니다. 다음 외적인 상황으로 금년도 鎭海灣에 미증유의 赤湖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각종 폐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더 심화되어 國民保健상의 문제로 까지 번져나갈 위험이 있기에 이런 측면에서도 강조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水産問題를 다루는데 있어 水産業과 관련되는 다른 부분도 보다 신중히 다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流通問題도 그렇고 水産物價格安定事業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다른 關聯經濟政策을 엄격히 분석하고 국가의 綜合的 經濟施策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沿近海漁業의 살 길을 찾고 그 속에서 우리 水産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振興院이 사실 충분한 研究需要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水産業이 6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발달하면서 振興院의 研究人力이 產業界로 많이 流出되었기 때문이며 또 研究員에 대한 대우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單一號俸制가 되고, 정부도 연구기관에

대한 과감한 投資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80 년대의 研究需要에 충분히 대응하리라 생각합니다.

金均炫: 沿近海漁業 분야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여러가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다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生産分野에서 특히 최근 油價上昇에 따라 漁撈經費中 油價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省에너지 對策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적정한 규모의 漁船, 사람이 적게 타서 움직일 수 있는 어선, 또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노후어선의 改良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漁場문제로서 앞으로 우리 나라 沿岸에서 200 海里를 가정해 봤을 때 바다를 육지와 마찬가지로 가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政府에서는 얼마전에 國土綜合開發計劃을 세워 제 2 단계 計劃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바다에 대한 인식 소홀로 아까운 바다를 버린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麗川 앞의 光陽灣 같은 곳은 정말 좋은 水産保護地域인데, 그 당시는 工業化의 힘에 밀려 이 漁場을 노후화시켜 버렸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 忠武 앞에 있는 淸淨海域이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海域을 다 確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현재 기존 5개소에 7개소를 더 확보해 12개소를 일단 水産資源保全地區화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資源문제가 나왔습니다만 資源量에 비해 과다한 投資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구상은 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異口同聲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조건을 감안하여 隻數를 줄이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資源保護令에 대해서는 年內에 改定作業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 國家的 입장에서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을 경우도 있으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나 올해 赤潮등의 事件으로 關連부처, 國會에서도 이에 대한 補完法이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司 會 : 그럼 마지막으로 韓重健 會長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韓重健 : 이 이야기는 제가 좀 서서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司會를 보면서 여러분이 발언하신 要旨를 전부 요약해서 다음과 같은 案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會議 벽두부터 말씀드린대로 韓國農村經濟研究院에서 아까운 시간과 경비를 들여가며, 沿近海漁業의 발전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建議案을 종합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찬성하시면 決議를 받아서, 이를 院長께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여 5個項의 建議案을 만들었습니다.

建 議 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主 持 「沿近海漁業의 發展方向에 관한 政策協議會」에서 水產業界의 下記 署名人士들이 연구한 것을 진지하게 발표하고 토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事項으로 集約, 決議하여 韓國農村經濟研究院 院長으로 하여금 政府와 國會 및 기타 관계 要路에 進達하여 署名한 인사들이 주장한 事項들이 꼭 실천에 옮겨지기를 建議합니다.

1. 沿近海漁業 振興對策을 樹立할 수 있는 官民合同委員會, 假稱「沿近海漁業振興委員會」를 政府내에 구성할 것

2. 政府는 沿近海 水產資源의 保護, 육성을 위하여 海面 또는 內陸水面에 인접한 工場과 기타 汚水와 公害物 發生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3. 政府는 沿近海漁業者들의 保護, 育成을 위한 과감한 增產施策인 漁場造成으로서의 漁場生産性 提高, 漁船을 위시한 각종 施設改良, 漁獲物의 流通改善, 漁業被害補償制度和 漁業에 소요되는 資金의 충족을 기할 것.

4. 政府는 水產物의 完全食糧化 운동을 전개하여 糧穀과 같은 수준의 行政措置를 취할 것.

5. 政府는 資源保護를 國民運動化하고 無免許, 無許可漁業者의 根絶을 도모함과 아울러 既存 有免許 및 有許可漁業者들이 漁業收支均衡을 취할 수 있게 행정조치할 것.

司 會: 제가 要約해서 말씀드릴 것을 韓會長님께서 다 말씀드렸으니 따로 할 이야기가 없고, 오늘 4명의 發表者와 기타 참석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農村經濟研究院측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 좋은 意見들이 政策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開 會 辭

오늘 政府機關, 學界, 그리고 水産有關團體 및 漁民 여러분을 모시고 “沿近海漁業의 發展方向”에 관한 政策協議會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은 轉換期에 처한 우리나라 農水産業 發展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4 년전에 설립되어, 그동안 저희들은 미력하나마 研究院 設立目的에 부응하는 충실한 研究를 위해 진력하여 왔습니다. 研究事業의 일환으로 當 研究院은 몇 차례의 農業에 관한 國內 및 國際세미나를 개최하여 各界各層의 많은 意見을 수렴하고 政策研究를 통하여, 農水産部 政策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水産部門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모임을 갖지 못하던 차에, 오늘 이렇게 고명하신 水産關係 여러분을 모시고, 水産政策協議會를 갖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기대 또한 큼니다.

오늘 斯界의 專門家이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水産政策協議會를 갖게된 目的은 周知하시다 시피 落後된 우리 沿近海漁業의 지난날을 회고하고, 80年代에 대처할 發展方向을 찾기위한 데 있습니다.

三面이 바다로서, 바다를 피땀흘려 가꾼 보람으로 이제 우리는 漁獲高世界 9位, 水産物 輸出 6位の 上位 水産國으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는 바와같이 上位 水産國으로 만족하기에는 우리 水産業, 특히 沿近海漁業에는 너무나 많은 問題點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沿近海漁業은 최근 遠洋漁業이 위축됨에 따라 그 重要性이 새삼 강조되고

있으나, 아시다시피 漁業人口의 減少, 漁業資源의 枯竭, 漁家所得의 劣位, 周邊沿岸國과의 마찰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油價引上, 水質汚染의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現在의 이러한 애로들을 타개하고, 나아가 80年代의 福祉漁村建設을 위해서는 沿近海漁業의 改編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간의 經濟成長을 통해, 우리 沿近海漁業의 여건이 어떻게 변하고, 무엇이 沿近海漁業發展을 가로막아 왔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沿近海漁業이 나아가야 할 합리적인 方向이 무엇인지를 再定立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沿近海漁業 各分野의 專門家 여러분들의 기탄없고 솔직한 意見 교환은 우리나라 沿近海漁業 政策設定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本 政策協議會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을 위하여 많은 激勵이 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

1981年 11月 3日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甫 炫

附錄 2

會議時間表

10:00	開 會
10:00 - 10:10	院 長 開 會 辭
10:10 - 10:20	參 席 者 紹 介
10:20 - 11:20	主題發表 및 質議 (座長：許亨澤 - 海洋研究所長 職務代理)
	1. 沿近海 資源의 現況과 展望
	發表者：朴 炳 夏 (水產振興院 沿近海資源 調查科長)
	2. 沿近海 漁業의 改善方向
	發表者：朱 尤 一 (韓國農村經濟研究 水產開發研究室長)
11:20 - 11:50	Coffee Break
11:50 - 12:50	主題發表 및 質議 (座長：朴 九 秉 - 釜山水產大學教授)
	3. 沿近海漁業의 經營合理化 方案
	發表者：張 設 鎬 (釜山水產大學教授)
	4. 水協運動의 成果와 展望
	發表者：安 重 基 (水協中央會 教育弘報部 次長)
12:50 - 14:00	점 심
14:00 - 15:30	討議 (座長：韓 重 健 - 韓國水產振興會長)
15:30 - 16:00	Coffee Break
16:00 - 17:00	綜 合 討 議 (座長：周 鴻 章 - 國際水產開發研究院長)
17:00	閉 會
17:00 - 18:00	院長招請茶菓會

附錄 3

參席者名單

- 金 均 炫 (水產廳 生產局長)
- 金 成 斗 (朝鮮日報 論說委員)
- 金 榮 球 (海軍大學 教官)
- 金 鍾 哲 (水產廳 沿近海課長)
- 閔 庚 言 (水協中央會 調查部長)
- 朴 九 秉 (釜山 水產大學 教授)
- 朴 炳 夏 (水產振興院 沿近海 資源調查科長)
- 潘 性 紈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委員)
- 辛 炯 根 (農水產部 水產統計擔當官室)
- 辛 再 基 (水協中央會 常任理事)
- 沈 載 亨 (서울大學校 海洋學科 教授)
- 安 重 基 (水協中央會 教育弘報部 次長)
- 梁 泰 奎 (近海蝦蟇網水協 組合長)
- 柳 炳 舜 (水產廳 流通課長)
- 柳 晟 奎 (釜山水產大學教授)
- 李 曄 熙 (韓國水產新報社 會長)
- 李 鍾 禮 (現代海洋 理事長)
- 李 羲 秀 (水產振興院長)
- 張 謨 鎬 (釜山水產大學 水產經營學科 教授)
- 鄭 炳 璇 (第一製糖 食品研究所 顧問)
- 朱 尤 一 (韓國農村經濟研究院 水產開發研究室長)
- 周 鴻 章 (國際水產開發 研究院長)
- 崔 賢 道 (大型旋網水協 組合長)

卓 今 守 (釜 重下式養殖水協 組合長)

韓 重 健 (韓國水產振興會長)

咸 兢 烈 (水協中央會 副會長)

咸 在 胤 (韓國漁船協會 理事)

許 亨 澤 (海洋研究所長 職務代理)

沿近海漁業의 發展方向

1981年 11月 30日 發行

發行處：韓國農村經濟研究院

登 錄：1979年 5月 25日 第3-135호

印刷處：(株) 文 苑 社

722-6053 · 723-6068
